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2016.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 o n t e n t s \ 차례

I 어린이집의 설치 / 1

1. 국·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15
5. 부모협동어린이집	16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18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4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3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5
10. 놀이터 설치기준	39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46

II 어린이집의 운영 / 57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59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71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74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78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83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84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86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89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98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04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06
12.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116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120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1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23
1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124
17.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25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126

III 보육교직원 자격 / 129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131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33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36
4.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142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145

IV 보육교직원 관리 / 151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53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54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59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160
5.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161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66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69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179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182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185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189

V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 193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195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08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11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13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14
6. 보육교사 양성교육시설(보육교사교육원)	215

VI 어린이집 평가인증 / 227

1. 기본방향	229
2. 법적근거	229
3. 사업개요	229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230
5. 재참여 관리	239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240
7. 기본사항 확인	247

VII 3~5세 누리과정 / 251

1. 3~5세 누리과정 개요	253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등 지원	254
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담당교사 자격	257

VIII 시간제 보육 / 263

1. 시간제보육 사업 개요	265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66
3. 시간제보육 운영 체계 및 역할	275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277

IX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 283

1. 보육료 지원 총괄	285
2. 만0~5세 보육료	288
3. 장애아 보육료	289
4. 다문화 보육료	292
5. 방과후 보육료	294
6.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297
7. 가정양육수당 지원	300

X 보육예산지원(어린이집별 지원) / 303

1. 공통 사항	305
2.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307
3. 장애아 보육 지원	311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320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23
6. 방과후 어린이집	333
7. 기본보육료 지원	335
8. 차량운영비 지원	341
9. 교재·교구비 지원	342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343
11.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358
12.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364
13.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367
14.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검직원장 지원	369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371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374
17.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77
18.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383

XI 육아종합지원센터 / 385

1.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387
2.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392
3.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98
4. 상담전문요원 배치	400
5.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401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5
3. 직장어린이집	6
4. 가정어린이집	15
5. 부모협동어린이집	16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18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4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33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5
10. 놀이터 설치기준	39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46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가. 정 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법¹⁾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1) 이 지침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라. 배치기준

-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다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함(법 제12조)

마.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권장표준안 참조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3

직장어린이집

가. 정 의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해야 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전체 보육아동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한다)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일 것(재직 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 제37조의2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²⁾
 -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마. 위탁보육 세부이행기준

- (위탁비용) 위탁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입법 연혁 상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의무 이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탁보육 비용은 보육수당(‘14년까지 대체수단으로 인정)에 상응한 비용을 전제로 함.

2) 의무이행 대체수단의 정비(‘13.6.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 2014년까지는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여 위탁보육 및 보육수당을 지급한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위탁보육만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인정함(법 제14조, 2014.5.20. 개정)

- 종전의 보육수당은 각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위탁비용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만0세(418천원), 만1세(368천원), 만2세(304천원), 만3~5세(220천원)

- (위탁률*) 입소순위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위탁보육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5년에는 위탁률 30%를 이행으로 간주

※ 보육수요 (만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인원

- (지급방식) 위탁비용은 사업주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
- (금지조항) 위탁계약서에는 어린이집이 위탁비용의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특별 활동비 등 추가비용의 징수를 금지하는 조항 명기
- (위탁어린이집 회계처리)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 잔액이 있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에 충당. 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 (위탁계약서) 위탁계약서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부록 별첨)

바. 설치권장 및 행정지도

1)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조속히 시설을 설치하도록 시·도지사가 지도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지청장과 협조하여 근로감독차원의 행정지도를 병행
- 의무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지원(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운영비 지원 등)계획을 안내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설치·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권장·지도
 - 특히, 장소부족·비용부담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을 경우,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참여, 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고용부 지원)

※ 지자체·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정부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으로 지원 가능

2)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활용하여 직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의 자녀 양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보육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사업장내 또는 인근에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에 한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에 대하여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사. 이행강제금의 부과

- (부과주체)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청 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 외 모든 의무미이행사업장은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특정사업 운영을 위해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음

- (부과방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직접설치, 위탁보육)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부과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조사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실태조사 결과 제공하는 미이행사업장, 조사불응사업장 명단공표 결과 참고 가능

- (부과금액) (해당사업장 근로자 자녀수의 65%*) ×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의 50%**) × (6개월***)을 부과(단, 회당 최대 1억원)

* '12~'14년 0~5세 평균 시설(어린이집+유치원)이용 아동수

** 직장어린이집 운영 또는 위탁보육 사업장의 1개월 평균 부담금

*** 1년에 2회 부과 가능하므로 1회 부과시 적정하다고 산정한 금액

- (부과시기)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제44조의2에 따른 이행명령일, 이로부터 1년간 부과 가능

아.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 직장어린이집 위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을 참조 단, 사업장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사항목, 배점 등 조정가능

자.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보고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함

■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직접지원) ■

지원주체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비 고
고 용 노 동 부	설 치 비	무상지원	시설전환비	3억원 (공동 6억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어린이집 80%,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집 9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15억원	- 소요금액의 90%지원 (시설매입비의 경우 소요금액의 40%)
			교재교구비	5천만원	- 소요금액의 60%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영아·장애아어린이집 80%,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어린이 집은 90%) - 교체 시 3년 단위로 3천만원 지원
	용 자	용자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상기업 1% ※토지매입비는 용자대상에서 제외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인건비	1인당 월 60만원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120만원)	- 대상 :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은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지원가능)
	운 영 비	무상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만원 ~ 520만원	- 매월 말일 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차등지원 •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원 • 현원 40명~59명 : 월 280만원 • 현원 60명~79명 : 월 360만원 • 현원 80명~99명 : 월 440만원 •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원 - 공동어린이집인 경우, 컨소시엄 내 근로자 자녀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자녀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정책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02-2670-0411~24, 대전 042-870-9111~6, 부산 051-320-8182~7)로 문의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7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공모를 통해 선정·지원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정책(간접지원)

구 분	지원 내용	비 고
부동산관련 세제지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2018.12.31.일까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취득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
개별소비세 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어린이집 운영비용 필요경비 인정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사업 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23호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계선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위치에 있으면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ex. 복지부(아름동), 보육정책국(어진동)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장)

Q3 단기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월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여러 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으로 보나요?

A4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는 형태이므로, 캠퍼스 내 흩어져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관련

Q1 어린이집 보육 정원 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최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1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6pg)

Q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장 공동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사업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위탁보육 관련

Q1 위탁보육의 의무이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려면 보육수요인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Q2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수요 결과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을 때 이를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중 0~5세 영유아 아동이 전혀 없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단공표심의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명절차 등에서 소명하여 인정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 위탁보육을 할 수 있나요?

A3 유치원과는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사업장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지 않은 유치원 재원 원아는 위탁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재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육비용을 30%로 낮게 설정한 것임

Q4 위탁보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사업장이 위탁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위탁보육으로의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 어린이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니기를 희망 하는 어린이집과 모두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탁보육 계약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첨부)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 어린이집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회계 상 인건비 외 지출이 어렵다고 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을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으나('15) 16년부터 잔액을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는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Q9 맞벌이 부모로서 아빠는 A사업장, 엄마는 B사업장에 근무하며 모두 의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쪽 사업장에서 한 아이에게 동시에 위탁보육계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9 양 쪽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 지급 방식 문의

- 반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적을 때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 환불할 필요 없이 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클 때 어린이집은 차액을 어찌 충당해야 하나요? →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시행 시기 관련

Q1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16.1~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Q2 '15년중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설치를 계획중이며, 16년 초 준공하여 하반기 개원에정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가정어린이집

가. 정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이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 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에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인가를 득한 경우 설치가 가능함
 - ※ 상가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신청하는 경우, 내부구조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5

부모협동어린이집

가. 정 의

- 보호자 11인 이상이 조합법*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

6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가. 주요목적

-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과 관련한 공통된 기준을 마련, 적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 1) 합리적인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의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운영체 선정
 - 운영체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정히 검증하여 심사의 타당성·신뢰성 극대화
 - 선정기준의 객관화로 심사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확보
 - 선정기준 및 그 절차의 표준안을 제시함으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2) 위탁기준과 절차 및 심의 결과의 공개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3) 운영체 및 원장 등의 전문성 및 시설 운영능력은 면접실시로 심층검증

다. 기본원칙

1) 적용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이거나, 신규로 설립 예정인 어린이집 중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 용어의 정의

- 신규위탁 :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재 위 탁 :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 변경위탁 :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를 최초 선정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12.2.5 시행)의 규정을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 조항(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탁의 경우에 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 심의

2) 선정시기

-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은 2개월 이전 선정 완료
 - 위탁체를 조기에 선정,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도모
 -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경우, 설계 단계에서 위탁체 선정 가능

3) 선정방법 및 결과공개

- 신규위탁 및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단서의 대상은 예외로 함

-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 공개
-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결과는 공개

4) 위탁기간

-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함.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 가능

5) 운영체(법인·단체·개인)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포함) 또는 개인
- 인건비지원 상한 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제한 금지

※ 신청자격 제외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위탁체 명의로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운영조건

- 신규 및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시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장애아·시간연장·다문화이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를 전제로 하되,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을 권장
 - － 취약보육을 2개 이상 실시하지 못할 경우,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 후 그 적용여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7) 선정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심사
-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며,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보육정책위원회의 자격을 갖춘 경우 심사가능(「영유아보육법」 제6조 참조)

8) 심사원칙

- 심사기준은 권장 표준안을 참조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 심사기준은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으로 지역의 보육여건 및 시설 특수성 등을 감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항목, 배점, 동점처리 등 검토 후 조정가능
-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등)에 있는 자는 위원 제척,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신청 가능(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참고)
- 심사는 집합심사를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할시 현장확인 실시
-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재모집 결정

※ 심사 시 연령, 성별 등 영유아보육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자료 : <대법원 2009.5.28., 선고 2007 추134판결>

라. 세부지침

1) 위탁체(신규·변경) 선정

- 선정시기
 - － 신축은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기존시설은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
- 위탁체모집
 - － 공고 : 일간지 또는 시·군·구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아이사랑포털 등 관련기관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 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까지 2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대상시설, 위탁기간, 선정기준 방법, 위탁운영 조건, 사업설명회 개요, 신청서교부, 신청서접수 (장소 및 기간), 지원사항, 구비서류, 심사결과 공개 등

○ 사업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공고일로 부터 7일 이내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현장설명 : 필요시

○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접수기간 : 접수 개시일로부터 7일 이상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영체			비고
		법인	단체	개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원장)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심사기준 : 위탁체(신규·변경)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

- 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를 원칙

2) 재위탁 심사

- 심사시기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접수
 - 제출서류

구 분	서류항목	운 영 체			비 고
		법 인	단 체	개 인	
개별사항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			
	■ 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	○		
	■ 주민등록등본			○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 신청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 시설운영 기간동안 사업운영 실적 ■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평가 등)				

- 심사기준 :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
- 심사결정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 운영체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시,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활용, 공개 원칙

마.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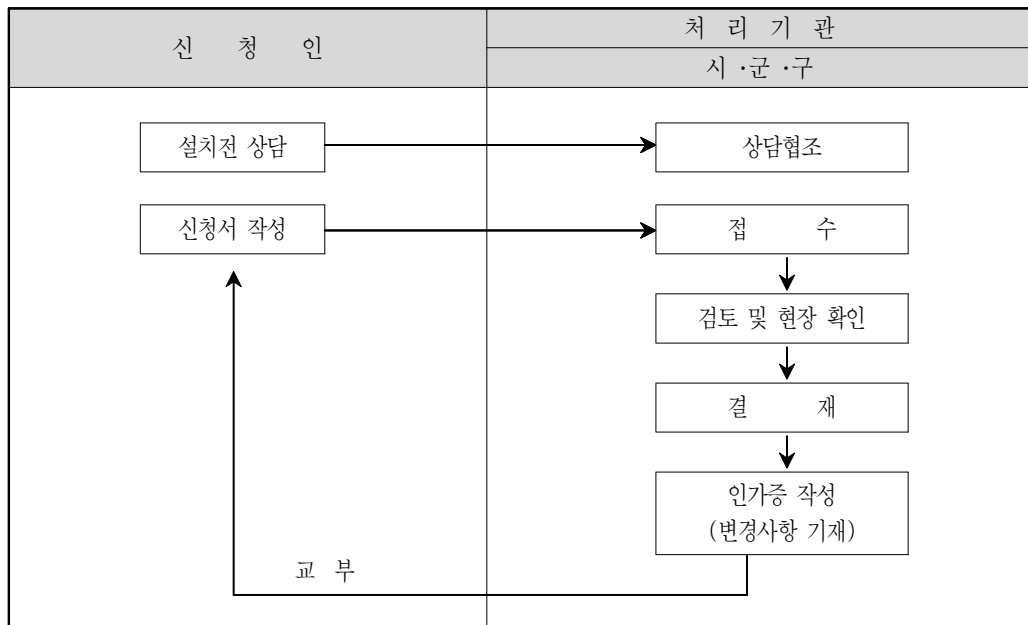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무 수행 시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와 함께 동 권장 표준안을 참조
 -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공통심사 기준표 및 선정관리 기준 등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가능.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탁심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 의함
 - ※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심의하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위탁 심의 관련 비중을 조정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 2)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³⁾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건축물대장등본을 어린이집 시설 인가 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전자문서 포함)는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각호⁴⁾에 따름(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다. 인가 시 유의사항

-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소재지·정원 변경 및 증·개축 시설에 적용함
- ☞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

- 3)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 4)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3. 변경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삭제)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6.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7. 어린이집임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2)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 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영유아보육법령 및 건축관계 법령, 소방관계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보건법」 등 어린이집 인가 관련 법령 및 인가절차를 고지하고,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 후 인가함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 “3-가-마)” 및 “사)”의 규정에 의한 옥외놀이터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1.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시행규칙 [별표1] 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연간 경상보조금 수입 총액과 보육료 수입(보호자 부담 보육료 수입은 제외)을 기준으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보증기간 1년 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가정·민간어린이집 설치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재산요건 관련

-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토지·건물에 대한 대표자의 부채비율이 50% 미만인 되도록 함
 - ※ 임차건물일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어린이집 자산 금액(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 대비 대표자의 금융기관 부채 중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 비율로 계산

※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실거래가 자료가 없는 경우(중여, 상속,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는 인근지역의 국토부 실거래가 적용(국토부 실거래가도 없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적용). 기타 경매 시에는 낙찰가를 적용하고, 건물 신축 시에는 인근지역 국토부 실거래가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 적용 가능

- 부채금액은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평가)회사에서 발급한 개인신용 정보(보고)서를 제출받아 대표자가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된 부채가 아님을 소명
 - ※ 어린이집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인가 시 소명한 부채 내역이 부정 또는 허위인 경우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 시 특기사항에 명시
- 종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13.1.1. 이후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 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예시 인가제한 판단 기준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보육수요 또는 현원'보다 많을 경우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 인증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함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보육계획 및 어린이집수급계획에 의한 인가 제한 금지

-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 ※ 다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인가제한 기준일 이전에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여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하고, 상담 시 설정한 유효기간 이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사전 상담의 유효기간은 지자체에서 설정)
- 재개발,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가 제한 시 주의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없음
 - ※ 예시) 설치자의 자격을 일정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거나 일정지역 거주자로 제한
- 신규 인가를 제한하면서 어린이집의 종류를 선별하여 신규 인가를 허용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음
 - ※ 예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인가제한 지역에서 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허용
 - ※ 예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을 인가하면서 동일 인가권역 내 민간·법인어린이집의 인가를 제한 등
- 신규인가 제한 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은 불가(어린이집의 폐쇄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
-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를 기준으로 인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야 함
 - ※ 예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① 입주민 대상으로 6세 미만 보육 대상 아동수를 조사한 후, ② 이용권역의 보육수요율을 적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후, ③ 의무어린이집의 정원을 감안하여 신규 인가시설의 정원을 산정하는 등 객관적 근거 필요
- 법적 근거 없이 건물의 용도 등을 이유로 인가를 허용하는 사항
 - ※ 예시) 건물의 용도가 어린이집이거나 어린이집 전용으로 건축한 경우에도, 건축법령에 의하여 용도 변경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인정하지 않음에도 인가
- 신규인가가 제한된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전국 평균치(매년도말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허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9.5%인 경우, 전국 어린이집평균 정원충족률(82.2%, '10.12.31.기준)의 초과율 82.2 ~ 89.5% 범위 내에서 신규 인가 허용 가능

○ 변경인가 시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종류 변경 시, 현장 확인 후 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평면도,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를 확인할 수 있음
- 법 제45조제1항에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처분(시설폐쇄, 운영정지)의 효과는 어린이집의 양수인 등에게 승계됨. 따라서 행정제처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후 대표자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행정제처 처분의 승계효과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양수인 등에게 사전 고지한 후 변경 인가
- 가정·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보육정원 감원을 조건으로 변경인가 가능
 - 감원 대상은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된 어린이집경우, 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 총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
 - ※ 다만, 대표자의 사망·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감원 대상에서 제외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간 양도·양수 시,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 변경 시, 정원 감원 시 설치기준에 위반되는 경우는 감원 제외
 -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보육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명에 사업주 개인의 명이 아닌 ‘00사업장의 사업주’로 기재할 것

※ 지침 시행 이후 변경인가 신청 시부터 적용

○ 2015.1.28. 이후 원장 변경

- 어린이집 원장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에서 제외함
 - ※ 시행규칙 제5조의2(‘15.1.28. 개정), 시행일 이후의 원장 변경부터 적용
- (변경방법) 원장 임면권자의 임면신청 및 시·군·구 승인으로 원장 변경
 - ※ (임면권자) 국공립·시·군·구청장, 부모협동-조합대표자, 기타-어린이집대표자
 - ※ 기존의 원장 변경인가신청서 제출 불필요
- (인가증 교부) 어린이집 인가증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발급
 - ※ 인가증상 출력 교부일이 인가일자가 아님에 유의

<보육통합시스템 변경 방법>

- 원장 임면신청서 제출(대표자, 방문신청) 및 전임 원장 면직신청(시스템) → 면직 승인 및 원장 정보 변경입력(시·군·구) → 시스템 가입 신청(신임원장) → 가입승인(시·군·구) → 임면신청(신임원장) → 임면 승인

☐ 어린이집 유형별 종류변경 등 가능 여부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장애아	기타		공동주택 (관리동)	기타			
종류 변경 가능 여부	X	X	X	X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 ○ (기타)	X	○	△	X	X

○ 인가제한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어린이집 유형 변경 불가

－ 유형 변경을 원할 경우 폐원 후 신규인가 절차 진행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 인가제한을 받는 어린이집은 (정원 증감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유형 변경 판단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바 타 유형으로의 변경 불가

－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은 당해 목적 수행을 위해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타 유형으로의 변경 불가

－ 기타 (종교단체 등이 설치한)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정원 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 관리동 의무어린이집(민간)은 주민공동시설에 설치하는 바 주민공동시설을 벗어난 곳으로의 소재지 변경 불가

－ 민간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정원감원, 용도변경 전제)으로만 유형 변경 가능

－ 민간어린이집 매입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의 경우 민간어린이집 폐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절차 진행

－ 가정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으로의 유형변경은 정원 증원과 용도변경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변경 불가 원칙. 다만, 정원 증원과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4) 2005.1.29일 이전 설치 어린이집의 유의사항

○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5년 이내(2010. 1. 29일까지) 현행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 중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면적기준은 종전 규정(어린이집 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보육실 면적은 3세 미만 2.64㎡·3세 이상 1.98㎡)을 적용

－ 또한, 2층 또는 3층에 보육실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한 부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단,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에 있는 층)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보육실)은 2010. 1. 30부터 운영불가

○ 유의사항

①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② 대표자·종류·소재지 또는 정원(증원에 한함)의 변경 인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기준이 아닌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의 기준(설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등)을 적용

5) 어린이집 인가신청시 대표자(설치자) 유의사항

-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대표자 상호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의견 대립이나 재산권 문제 등 보육환경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가 내재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대표자는 1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 보장, 헌법 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 평등의 원칙의 취지 상 어린이집의 토지·건물을 공동 소유(부부 포함)한 경우 공동 대표 인정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방법 예시

□ 어린이집 인가제한 여부 결정 기준

- 정원충족률, 수요충족률, 기타 기준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제한 여부 결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 설정

- ‘어린이집 이용권역’이란 ‘해당지역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함

□ (중기) 보육 수요와 공급의 산출

- 보육수요 파악 : 이용권역내 <보육대상 아동 수 × 보육수요율>

$$= <\text{주민등록상 영아(0~2세) 수} \times \text{영아의 보육수요율}> + <\text{주민등록상 유아(3~5세) 수} \times \text{유아의 보육수요율}>$$
 - * ‘보육수요율’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의 수(A)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B)과 향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추계되는 아동(C)의 비율<(B+C)/A>을 의미함
 - * 보육수요율은 시·군·구 또는 특정지역의 여건에 맞게 설정하여야 함

<예시>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수			보육수요(수요율)						보육공급 (B)	수요 충족률 (C=B/A)
영아 수	유아 수	계	영아 수	영아 (적용비율)	유아 수	유아 (적용비율)	계(A)	계 (비율)		
3,076	3,141	6,217	929	30.2%	1,266	42.2%	2,195	35.3%	3,423	155.9%
3,000	3,000	6,000	945	31.5%	1,266	43.9%	2,211	36.9%	3,420	154.7%
3,000	3,000	6,000	1,275	42.5%	1,266	43.9%	2,541	42.4%	3,420	134.6%

* 수요충족률(C)은 보육수요(A)에 대한 보육공급(B)의 비율을 의미함($C=B/A$)

• 보육공급 파악

- * 중장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 주택 재개발 등에 따른 어린이집 공급계획 반영
- *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정원 및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의 정원 반영
- * 법령에 의하여 변경인가가 제한되는 시설의 정원 파악하여 반영 (위험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시설, 지하 또는 4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 일부를 사용하면서 어린이집을 2층 이상에 설치한 시설 등)

□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산출

-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을 의미함

□ (중기)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을 확인 후 인가 제한 가능

- 보육수요 <어린이집별 정원>, 동시에 ‘어린이집별 현원 <어린이집별 정원>인 경우, 인가 제한 가능(동시충족)
- ☞ <지역별 보육수요율-중기>에는 유치원 이용 아동수를 포함하지 않고 추계하므로, 보육공급 및 어린이집 정원 산출 시에도 유치원 정원을 반영하지 않음

8

어린이집의 정원 책정방법

- 어린이집 정원은 ① 어린이집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실내) 면적 ② 보육실 면적 ③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정원 50인 이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책정함(소수점 이하는 절사)

면적기준 시설규모	어린이집 전용 면적	보육실 면적	놀이터 면적	산정기준
50인 미만 시설	영유아 1인당 4.29㎡	영유아 1인당 2.64㎡		각 면적 산정 인원 중 가장 적은 수를 정원으로 함
50인 이상 시설			영유아 1인당 3.5㎡ 원칙	

※ 보육실은 반별 최대정원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설치 전 상담 시 지도

예 교사 1인이 담당하는 5세아 1반은 최대 20명이므로, 보육실 면적도 이에 준하여 배치

① 어린이집 전용면적 산정방법

- 아동보육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기본시설(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시설(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등), 정원 50인 미만 시설의 옥내놀이터, 어린이집만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보육실은 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포함

- 산정 제외 : 기본시설(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 지하층 중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 기타시설(보육교직원 휴게실, 농산어촌 등에 설치하는 기숙시설),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옥외 및 옥내놀이터, 타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건물 현관·복도·계단 등)

※ 인근놀이터는 당연 제외

※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집단급식소 등 조리실로 인정받은 면적만 예외적으로 인정)

② 보육실 면적 산정방법

-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보육실,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

※ 가정어린이집의 거실면적 : 거실이 주방·식당과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도 적정하게 구분하여 산정

③ 놀이터 면적 산정방법

- 정원 50인 이상 시설의 경우 해당하며, 옥외놀이터 및 대체놀이터 등 인정받은 놀이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산정 대상 : 설치된 옥외놀이터·실내놀이터 및 인정받은 인근놀이터

- 면적산정은 신청면적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 평면도 등과 대조하여 면적 인정(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벽체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 산정)하되 보육과 관계없는(가구 등)시설물은 인가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해 면적에서 제외 가능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충업소, 전염 병원 등) 인근에 어린이집이 입지하지 않도록 인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공간(놀이터·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그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함
 - 따라서 위험시설과 어린이집간의 이격거리 산정은 각각의 장소적 경계가 되는 양 건물의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어린이집에 전용 부수공간이 없는 경우, 어린이집이 입지한 건물외벽을 기준으로 최단거리를 측정함
 - ※ 버스터미널 등 특정목적의 부지안에 주유소 등 위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버스터미널 부지경계선이 아닌 주유소 부지 또는 방화벽으로부터 산정
 - 부지경계선에 담(또는 벽)을 설치한 경우, 부지경계선과 담(또는 벽) 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함
 - ※ 위험시설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벽(예 : 주유소 방화벽)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과 위험 시설의 벽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공동주택에 설치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전체 건물이 아닌 해당 호실의 외벽을 이격거리 산정의 기준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육부서와 건축 및 기타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위험시설의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 시 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화장실·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 기본시설(시행규칙 별표1) :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피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여야 함)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여러 동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 시행규칙 제9조<별표 1>

○ 보육실은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층의 4면의 100분의 8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져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미터 이내인 경우에 실제상의 1층으로 봄.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1층으로 기재되어져 있어도 실제상 2층인 경우에는 1층으로 인정할 수 없음

다만,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이며,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인정

- 건물전체가 어린이집인 경우 및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1층부터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 배치

-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유자시설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경우 그 위층에 설치가 가능하나,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비상계단 등을 설치(시행규칙 별표1 3.가.3). 가) ①.(iv))

- 2005. 1. 29 이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2층, 3층 또는 2층과3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 대표자 변경으로 변경인가 하는 경우 기존 층수에서 운영 가능(여성부령 제14호, 2005.1.29, 부칙 제2조)

※ 단,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경우에 한정

- 조리실은 1층 이상(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 중 (i)의 경우 해당 층 포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에도 설치를 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근(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1. 선근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며,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근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3. 선근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선근(Sunken) :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 안목치수 :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보육교직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 ※ 전담영양사 및 전담조리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밀폐 가능한 냉온조절 운반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조리된 음식물의 오염 방지
-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 ※ 영유아용 수세식 변기는 가능한 한 10~15인당 1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 및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어린이용 변기를 갖춘 경우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시설규모에 따라 사무실, 양호실, 식당, 자료실, 상담실, 강당, 놀이터 등 설치 가능
 - ※ 어린이집 원장 사무실은 보육실과 동일 층 설치가 바람직
 - 보육교직원 휴게실은 설치 가능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은 농산어촌 등과 같이 교사 등 보육교직원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 ※ 보육교직원 기숙시설에 보육교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은 불가
 - ※ 어린이집의 일부를 대표자 등의 주거시설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

다.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 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 환경부서 담당)

10

놀이터 설치기준

- ☞ 신규, 신축, 증개축, 소재지 변경 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 업무용시설 밀집 지역등과 같이 지역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놀이터 인가
- ☞ 영아용 놀이기구를 구비하지 아니한 인근놀이터는 인가하지 아니함
- ☞ 정원 50인 이상 시설 중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10. 1. 29까지 현행 기준에 의거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 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 1인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 ① 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② 신축, 증·개축, 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 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③ 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2)가)① 중 (i)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마) 놀이기구 설치기준” 참조
- 어린이집의 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 세부기준 참조
- 직장어린이집은 옥외·대체놀이터(옥내·인근놀이터) 중 자유롭게 설치 가능
- ※대체놀이터 활용 시 주 3회, 매회 30분 이상 실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나. 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 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 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페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적은 ‘가. 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 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정 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 45%를 기준으로 1인당 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 : 정원 51명 중 12개월 미만이 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 75㎡(= 48 × 0.45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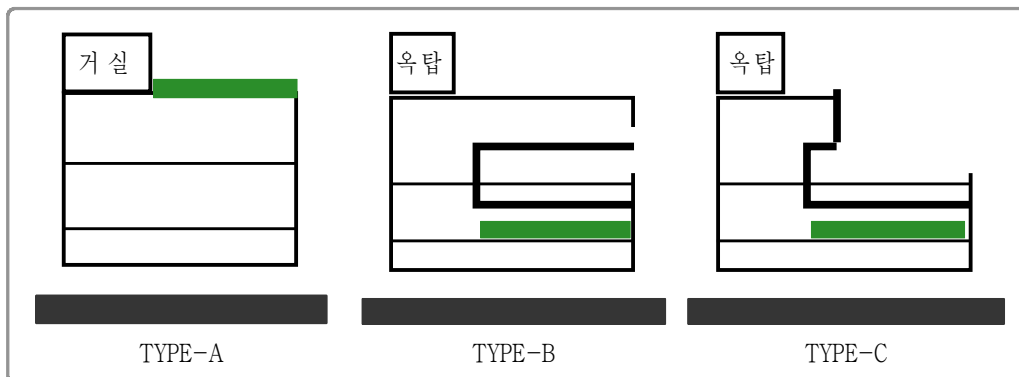
다. 놀이터 종류

- 옥외놀이터 : 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 :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① 실내놀이터 : 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② 옥내중간놀이터 : 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 베란다 등)
 - ③ 옥상놀이터 :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 : 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 예시 ■

※ TYPE-A : 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C : 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 옥상놀이터 유형 : 예시 ■



라. 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① 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는 경우, 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② 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③ 대체놀이터 종류 : 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 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 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 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① 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② 합산되는 놀이터는 최소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 ③ 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 1인당 4.29m²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 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 ①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 분진, 폭발, 화재 등의 위험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 ② 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로 설치

※ 예) 5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가능, 6층 건물은 옥상놀이터 설치 불가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다만, 비상재해 시 영유아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5층 이하로 설치 유도

- ③ 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 10cm 이내, 계단의 유효 높이는 15cm 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 ① 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② 어린이집 2층과 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③ 어린이집 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비상계단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 50m 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 ①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 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부식, 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안치수는 80mm 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 이상의 강화유리,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 ③ 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 건물의 벽 또는 벽에 해당하는 4면의 1/2 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 놀이터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구조 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 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 보호난간은 최소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m까지는 콘크리트·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옥내중간 놀이터 세부기준 ③, ④ 참고

- ③ 빗물 등의 배수, 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 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 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 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 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 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 초등학교의 경우, 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 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 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 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공문' 등의 '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 어린이집부터 보행 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이내의 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 : 보행거리 → 직선거리, 100m → 200m

마. 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고정식) 1종 이상 포함, 최소 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놀이기구 종류

-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②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회전놀이기구,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또는 이를 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 등
- ③ 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 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 2종 설치로 인정

④ 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 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② 놀이집, 널빤지와 안전 사다리, 삼각대, 뽕틀, 평판대, 점핑 바운서, 구르기용 매트, 현 타이어, 대형 블록류, 이동식 농구대 등
- ③ 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① 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② 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 기타 놀이도구(권장) : 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 게임놀이, 공놀이, 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 자동차 등 탈 것, 소꿉놀이) 등

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 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 '15.1.26. 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 신규 인가, 소재지 변경, 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11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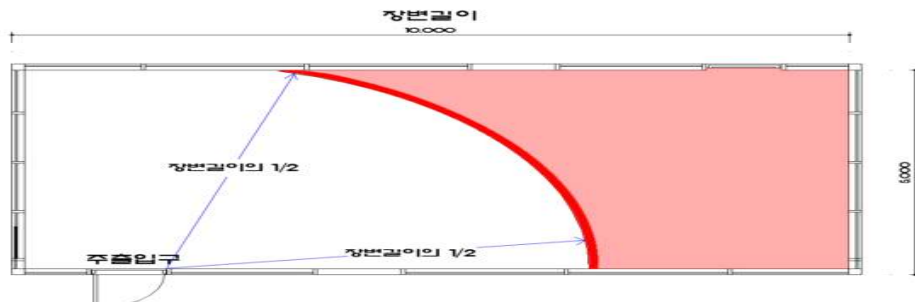
- ☞ 신규인가 시설 및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재설치하는 시설에 적용함
- ☞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시, 동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반드시 고지함

가. 어린이집이 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 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강화통유리 설치 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 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내여야 하며, 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09.7.3.이전에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 124호 제3조제2항, 2009.7.3)

-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 그림에서의 장변은 10m가 됨
-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 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 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 1/2(도면의 경우 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 다만, 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 노유자시설 중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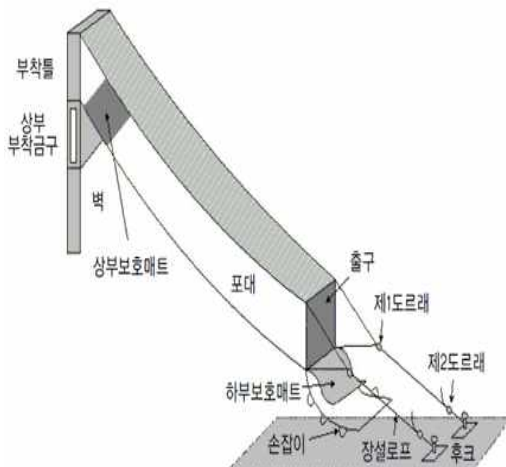
※ 내부 직통계단: 건물의 어떤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4년부터 수직구조대(나선형, 협착형), 피난 트랩 등 불인정

※ 2·3층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중 구조대는 하강식 경사구조대만 인정, 인가 시 구조대 각도를 확인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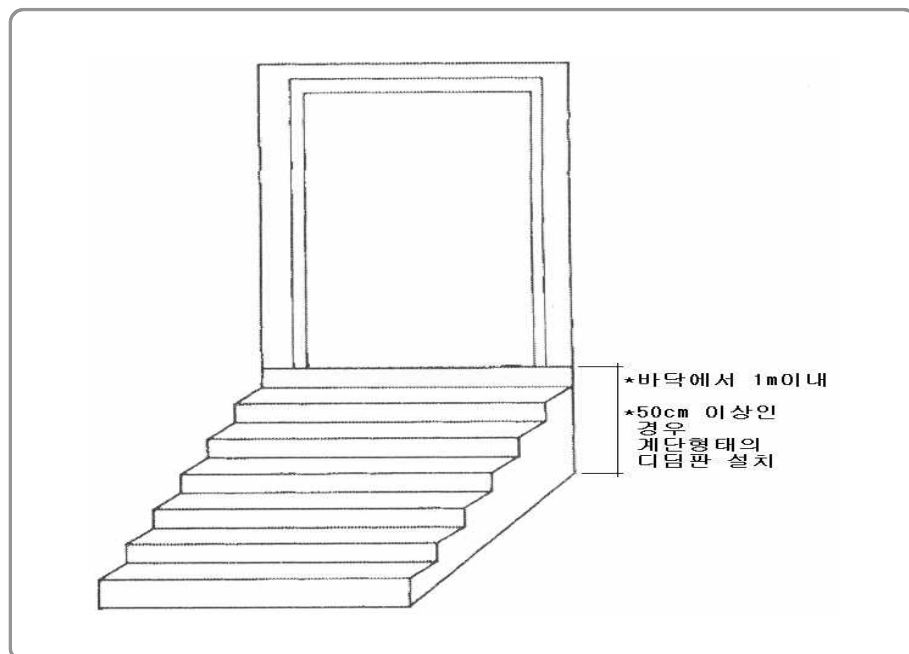
하강식 경사구조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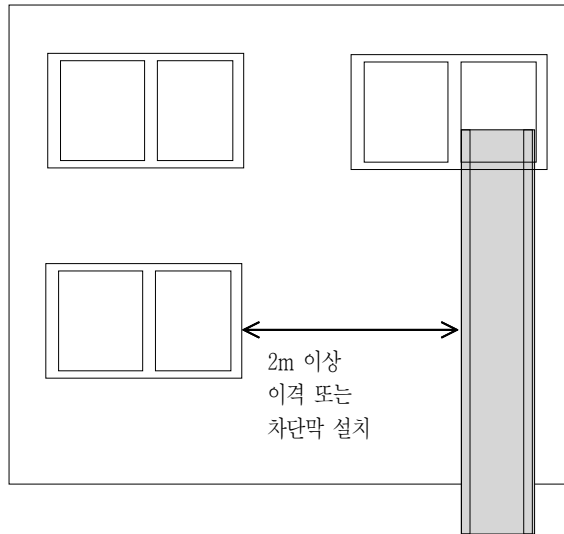
하강식 경사구조대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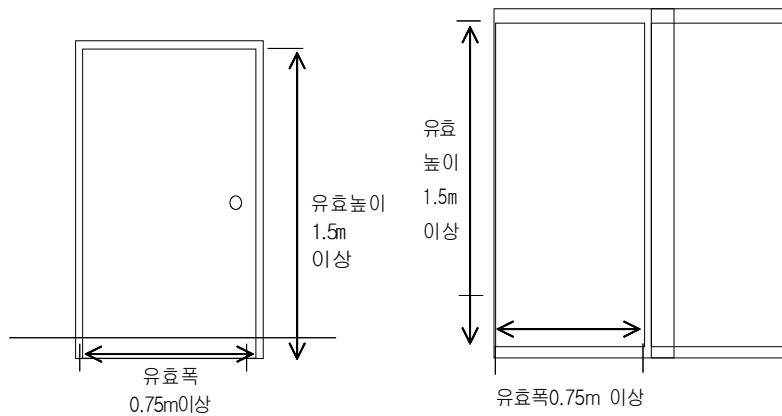
- ① 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 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 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 ③ 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④ 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⑤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 출입문은 대피 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⑥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 50cm 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 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 단의 유효너비는 20cm 이상, 유효높이 16cm 이하를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 2m 이상 이격되도록 설치하거나, 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 ⑦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 이상으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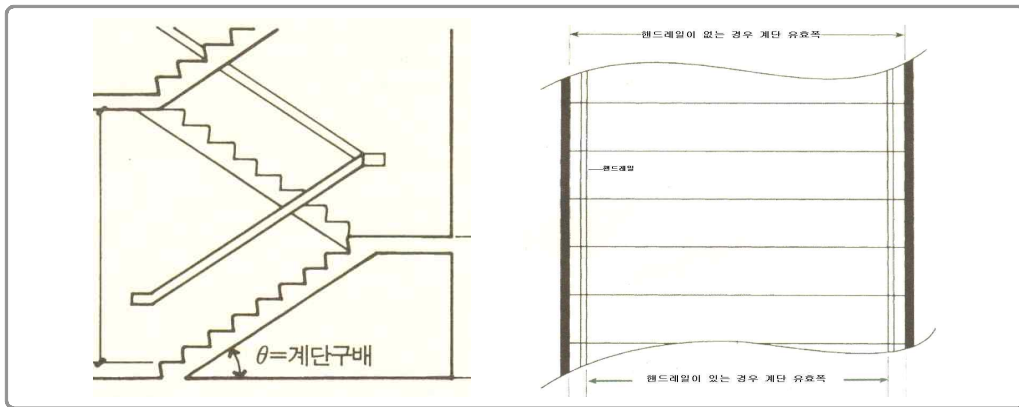


- ⑧ 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⑨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 : 위 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 ① 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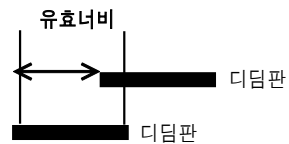
② 비상계단의 유효폭은 50cm 이상으로 함



③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 26cm 이상으로 함

유효너비란?

그림과 같이 계단 DOWN 시 보행자의 발로 밟을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함



④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⑤ 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 세부기준

①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 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② 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 경우 직선형, 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 나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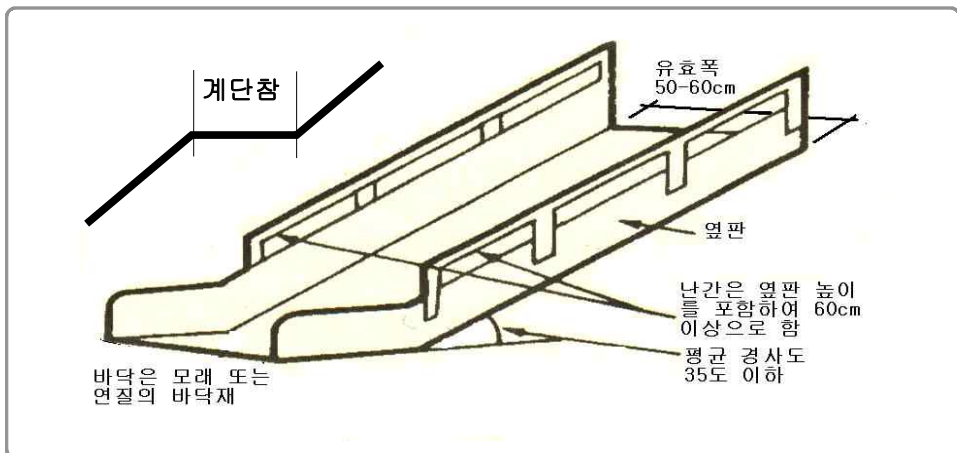
※ 반원통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③ 어린이집의 2층과 3층에 설치하며, 층별로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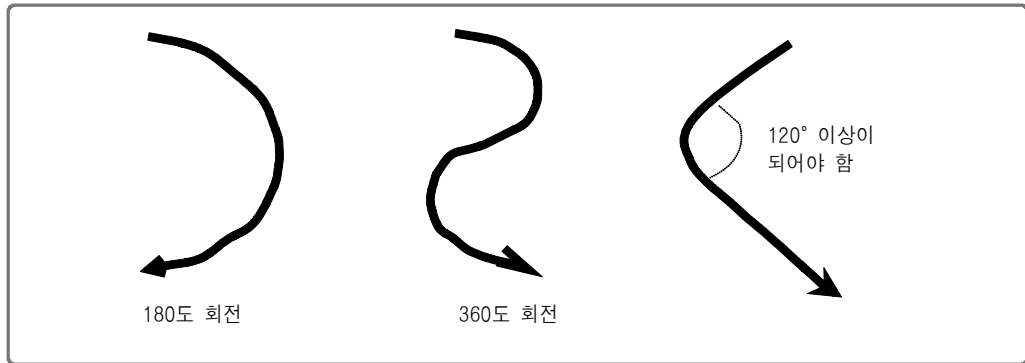
④ (직선형 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 6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 이음부에 의한 충격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 50~60cm 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를 초과하고 40°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 마다 계단참(중단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 : 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⑤ (나선형 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⑥ 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⑦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m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 하여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 ⑧ 기타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인가 관련 법령

1 영유아보육법령

- 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법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법 제15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법 제15조의2(놀이터 설치)
- 법 제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 법 제16조(결격사유)
- 법 제20조(결격사유)
- 법 제28조(보육의 우선제공)
- 법 제39조(세제지원)
- 법 제45조의3(행정재처분효과의 승계)
- 시행령 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 시행령 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 시행규칙 제4조의2(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 시행규칙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 시행규칙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시행규칙 제10조(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2 기타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 「건축법」
 - i) 건축법 제2조(정의)
 - ii)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호, 제2호, 제11호
 - iii)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 iv)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 제4항 내지 제5항
 - v)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제2항
 - vi) 시행령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vii)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제1항
 - viii)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ix)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 「주택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칙)
 - i) 주택법 제2조(정의) : 제9호

- ii) 규정 제9조(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iii)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i) 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ii)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 i) 법률 제2조(정의)
 - ii)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 iii) 시행령 별표 2(특정소방대상물, 제5조 관련)
 - iv) 법률 제9조(특정대상소방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제1항
 - v) 시행령 제15조(특정대상소방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 등)
 - vi)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 제1항 내지 제3항
 - vii) 시행령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 제3호
 - viii) 시행령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도시가스사업법」
 - i) 법 제15조(시공감리 등)
 - ii) 시행규칙 제22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신청 등)
 - iii) 시행규칙 제25조(정기검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i) 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ii) 시행규칙 제29조(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 i) 법 제66조의2(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 ii) 시행규칙 제3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 「도로교통법」
 - i) 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ii)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 iii) 법 제2조(정의) : 제1호 내지 4호, 제21호
 - iv) 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 제1항 내지 제2항
 - v) 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 제1항 내지 제4항
 - vi)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 제1호 내지 제4호
 - vii) 시행규칙 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 viii) 시행규칙 제3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 제1항 내지 제4항
 - ix) 시행규칙 제37조(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회수) : 제1호 내지 제3호
 - x) 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행자의 의무)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i) 규칙 제2조(정의)
 - ii) 규칙 제19조(차대 및 차체)

iii) 규칙 제25조 내지 제29조, 제47조 내지 제50조, 제106조

• 「방송법」

- i) 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ii) 시행령 제39조(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 i) 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개별소비세법」

- i) 법 제18조(조건부 면세) : 제1항의 제6호, 제12호

• 「지방자치법」

- i) 법 제144조(공공시설) : 제1항 내지 제3항

• 「식품위생법」

- i) 법 제2조(정의) : 제9호
- ii) 법 제88조(집단급식소)
- iii)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 iv) 시행규칙 제94조(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 v) 법 제51조(조리사)
- vi) 시행령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vii) 법 제52조(영양사)
- viii) 시행령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 i) 법률 제3조(정의)
- ii) 법률 제13조(차별금지)
- iii)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iv) 법률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v)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 vi)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vii)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 viii)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ix)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i) 법률 제7조(대상시설)
- ii)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 iii)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iv)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i) 법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 ii) 법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iii)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개인정보보호법」
- 「석면안전관리법」

i) 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ii) 법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iii) 법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iv) 법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기타 건축·주택·소방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등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대법원 판례
 - i) 1994. 10. 15. 선고, 94누 2213 판결
 - ii) 2008. 4. 24. 선고, 2007두 25060 판결
- 위험물 저장시설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i) 안건번호 05-0164
 - ii) 안건번호 08-0232
 - iii) 안건번호 08-0029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59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71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74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78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83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84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86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89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98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104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106
12. 융자어린이집 사후관리	116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	120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21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23
1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124
17.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125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126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가. 어린이집 운영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나.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1) 연령별 반편성

-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출생일 기준
만0세반	'15. 1. 1일 이후 출생
만1세반	'14. 1. 1 ~ '14. 12. 31
만2세반	'13. 1. 1 ~ '13. 12. 31
만3세반	'12. 1. 1 ~ '12. 12. 31
만4세반	'11. 1. 1 ~ '11. 12. 31
만5세반	'10. 1. 1 ~ '10. 12. 31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연령별 반편성시 반별 정원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반별 정원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하여야 함

2) 상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⁵⁾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⁶⁾에 편성 허용

□ 1, 2월생에 대한 2016년도 반편성 원칙

- 원칙 :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시 '12년 2월 1일생은 ['12.1.1~'12.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 1, 2월생으로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 예시 '12년 2월 1일생은 ['12.1.1~'12.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11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 경우 포함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반편성신청서를 제출

- (만0세아)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은 보호자 신청⁷⁾에 의해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5) 상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II-1>

6) 상위연령반 : 전년도 1.1 ~ 전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7) 반편성 신청서 <서식 II-1>과 동일

□ 만0세반 아동의 상위반 편성 안내

- 원칙 : 2015년생은 [‘15.1.1일 이후]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대상) : 2015년생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따라 [‘14.1.1~‘14.12.31] 출생아 반에 반편성 허용. 단, ‘17년에도 만1세반에 편성되어 동일과정을 반복하여야 함
- 예시 2015년 4월 6일생은 [‘14.1월 이후] 출생아반 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만12개월이 되는 ‘15년 4월의 다음 달인 5월부터 [‘14.1.1~‘14.12.31] 출생아반인 만1세반 편성 허용
- 신청 및 적용시기 : 만12개월이 되는 달로부터 보호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아동이 만12개월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만1세반 편성 가능
- 유의사항
 - 원장은 보호자가 신청을 원할 시 ‘17년에도 만1세반을 반복해야 함을 반드시 안내
 - 단, 1, 2월생은 연령별 반편성 기준의 예외 적용 가능
 - 신청서양식,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보육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반 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만0세아가 상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탄력편성 금지

3) 하위반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취학유예아동)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취학유예아동 (‘09.1.1.~‘09.12.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 취학유예 확인서류 :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 혹은 취학유예통지서

- 입학연기신청은 만5세 10월~12월 중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취학유예통지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송부한 취학통지서를 취학예정 초등학교에 제출시, 해당학교장이 발급 (문의 : 거주지역 교육청, 취학예정 초등학교)

-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 (하위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⁸⁾이 있을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 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⁹⁾에 편성 허용

8) 하위반편성 신청서 <서식 II-1>

9) 하위연령반 : 익년도 1.1 ~ 익년도 12.31출생아동이 속해 있는 반

□ 2016년도 하위반 희망아동 반편성 원칙

- 원칙 : [동년도 1. 1~동년도 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12년 4월 1일생은 [12.1.1~12.12.31] 출생아반에 편성
- 예외(대상) :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익년도 1. 1~익년도 12.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12년 4월 1일생은 [12.1.1~12.12.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하위연령반('13년생반) 편성 가능

□ 예외 적용 설명

- 희망아동에 한하여 부득이한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발달차이(신체, 인지, 정서)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부모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단, 외국 장기거주(체류) 아동이 귀국하여 국어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발달차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해당하지 않음.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예외규정은 2016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해 허용
 * 당해연도 (3월1일 이후)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 및 타 어린이집에서 전입하는 경우 포함
- 희망아동의 하위반 편성시 1반에 1명에 한하며,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희망아동이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초과보육 금지

□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 취학유예아동도 희망아동과 동일한 절차로 편성(단, 취학유예통지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 접수증(관할 주민센터 비치)을 첨부

□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 [동년도 1. 1 ~ 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 계속해서 하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하위반편성 신청서를 제출

4) 혼합반 편성(연령별 반편성의 예외)

- (혼합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혼합반 운영	만0세와 만1세 영아	만1세와 만2세 영아	만0세와 만2세 영아	만2세 이하 영아와 만3세 이상 유아	만3세와 만4세 이상 유아
원 칙	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교사 대 아동비율	1 : 3	1 : 5	-	-	1 : 15

- (영유아 혼합반) 단,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은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영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인 후 예외적으로 만2세와 만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 혼합반 편성 승인신청서는 상(하)위반 편성신청서를 준용
 -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016년 농촌 보육여건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5) 반별 정원 탄력편성

-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

반별 정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탄력편성 가능인원	-	1명	2명	3명	3명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 만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 (예) 만1세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 : 만1세아 5명
=> 00어린이집의 만1세반이 A~E반 총 5반일 경우,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의 합은 4명 이하여야 하므로 탄력편성 중인 영아의 수가 5명일 경우에는 F반을 구성해야 함
- 장애아반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 편성 가능(단, 중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6) 통합반 운영

- 당초 편성된 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기 등원 및 귀가 등으로 보육아동이 현저히 적을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을 연령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통합반' 편성운영 가능

- '통합반'은 09:00 이전 및 15:00 이후에만 편성 가능하며,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보육하여야 함

※ 보육일지에 통합반 운영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 입소순위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는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거주자 자녀 우선입소대기자와 일반 입소 대기자를 구분하여 각각의 입소 우선 순위에 따라 입소 순위를 정함. 다만, 어느 한쪽의 현원이 부족하거나 입소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을 준비 중인 자의 범위 : 직업훈련생
-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자 : ①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와 ②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
 -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전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
 - ※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 할 것을 요함(서류상 확인)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 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
 -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를 요구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2)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7조의 2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의 대기자 전산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제출받은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 기간별 책정기준)에 준하여 3년으로 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됨
 - ※ 예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됨
 - ※ 단, 시군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기기간 연장 가능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 다만, 공동주택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의 경우 동일 순위내 경합이 있을 경우, 공동주택 단지내 가구의 영유아가 우선 입소
 - ※ 다만, 지자체가 기부채납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시행규칙 제29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부채납한 주체와 지자체 간 협의한 범위(30~70%) 내에서 우선 입소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3) 입소 우선순위 준수

-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 위반시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시행규칙제38조1항 별표9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 관할 지자체는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부 또는 모의 장기입원, 행방 불명 등)이 있는 영유아의 경우 입소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신청(상당)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어린이집 입소대상자 선정 및 반 편성시기 등

- 관할 지자체는 신학기 대규모 원아모집을 실시하고 입소대기관리시스템에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

라. 보육 운영 시간

1) 어린이집 운영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제외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또한,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기준시간 초과보육, 휴일보육 등 운영 가능

-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이동 외출 시 아동 안전을 고려하여 부모와 협의 하에 지정된 보호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2) 휴원명령 및 임시휴원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하여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휴원계획과 당번 교사 배치를 통한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시간 단축 또는 휴원을 할 수 있음
 - 지체없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에 대비하여 당번 교사를 배치하는 등 영유아와 보호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3) 하절기 등 집중휴가기간 운영원칙

-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므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함
 -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당번교사 배치
 - ※ 휴가계획 미수립 및 보육수요파악(부모 동의 등)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 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도점검 대상임 또한, 차량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지도점검 대상임

세부 운영 절차 예시

- ① 교사의 순번제 휴가계획 수립
- ② 담임교사 휴가계획 통지 및 보육수요조사
- ③ 임시 반편성 계획 수립·운영

※ 시설의 규모 등 여건에 따라 일부 절차의 생략, 순서변경 등 변형적용이 가능하나 “보육수요(조사)파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해야 함

마. 보험가입(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관련 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내용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 회원 및 공제회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공제’에 가입하고, 영유아 등 입소 아동의 생명·신체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함
- 또한,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인 어린이집은 해당 법률(‘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등)에 따라 공제회의 해당 공제(‘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 ‘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 단, 법 제31조의2 시행일(2012.2.5) 이전에 민간보험 등에 같은 목적의 보험상품 등에 가입한 경우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기존 보험계약 만료 시에는 즉시 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2) 화재보험(공제) 가입

○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되, 공제회의 ‘화재공제’ 가입 가능

○ 가입내용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대비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화재보험 가입으로 갈음가능하나, 교재 교구 등 집기를 위한 화재보험(공제) 추가 가입 가능
- 공제회의 화재 공제에 가입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보험(공제)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3) 자동차보험 가입

○ 가입대상

- 차량을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집

○ 가입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대비(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보험료 부담

- 어린이집 부담 원칙

4) 기타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바.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

- 차량운행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됨. 다만, 차량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 장부 등의 비치(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영유아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 II-2> 또는 <서식 II-2-1>에 의한 생활기록부(전자서식 포함)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법 제29조의2)
-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학하는 어린이집의 장 및 아동이 입학한 초등학교의 장 등이 생활지도에 필요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전자서식 포함)을 송부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에 의한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장부 등의 보존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준하여 정하되, 전자적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어린이집 재무회계를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 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 및 제24조)
- 그 외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회계 서류 및 증빙서류는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

가. 수입·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로의 ‘세입·세출 외 통장’ 개설 가능하고, 감가상각비 적립금 및 일시 운영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 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하여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 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 ■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산
원칙	•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예산의 전용 •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한다.	•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 세입세출 예산서 • 준예산 • 추가경정예산	<장부>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봉급대장 • 보육료대장 <증빙서류> • 계좌입금증빙서류 • 수입·지출결의서 • 반납결의서 • 과목전용조서	• 세입세출·결산총괄 설명 • 세입·세출결산서 • 연도말 잔액증명 •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 잔액증명서

	예산편성	예산집행	결 산
		- 비품관리대상 - 예비비 사용조서 - 정부보조금 명세서	
과정	- 예산편성지침(2개월전) - 예산안 제출(개시5일전)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제출(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1)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II-3>을 발급하여야 하나 아이행복카드 이용시에는 카드발급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하며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 이용
 -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기 희망하는 경우 아이행복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 아이행복카드는 기발급된 아이사랑카드도 포함한 보육료 지원카드를 의미함
- 현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원칙을 준수
- 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

☑ 보육료 현금 수납 시 절차 및 준수사항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료 수납 시 무통장입금 또는 통장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등을 통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현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함

보육료 수납영수증 발행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은 <서식II-3> 서식에 따라 보호자에게 보육료 수납 영수증 발행



보육료 납부
(보호자 → 어린이집 원장)

-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에게 보육료 납부 영수증을 발행

↓ (7일 이내)

금융기관에 무통장 입금
(어린이집 원장 → 금융기관)

- 어린이집 원장은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보육료를 수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어린이집 관리 통장에 보육아동 명의로 무통장 입금(일괄 입금 불가)
- 어린이집 원장은 무통장 입금증 원본 보관



수입결의서 작성 비치 및
관련장부 정비
(어린이집 원장)

- 보육료 수납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원본을 첨부하여 수입결의서를 작성, 수입처리하고 관련장부 정비
(수입처리 시점은 무통장입금일 기준)

2) 지출관리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으로 하고,
 - 다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는 소액의 범위 내에서 현금결제 가능
-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
 -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인건비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
 -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등은 부가적으로 지급하고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은 별도 부담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3

보육료의 결정 및 수납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보육료 수납액의 결정

○ 결정권자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보육료의 수납한도액을 매년 1월말까지 결정하여 시달

※ 수납한도액 결정 즉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 통보

○ 수납한도액 결정 원칙

① 만 0~5세 보육료(다문화 보육료 포함)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이하 정부지원어린이집)과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이하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중 영아반(만0세~만2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보육료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 정부지원어린이집¹⁰⁾ :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정부지원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

② 장애아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결정

③ 방과후 보육료 : 정부지원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시도별 만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범위 내에서 결정

④ 시간연장형 보육료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결정

- 시간연장보육 : 시간당 3,000원
- 야간 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⑤ 24시간 보육 :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정부미 지원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

10) 위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용어의 정의는 보육료 등의 결정, 수납 및 지원시 동일하게 적용함

⑥ 휴일보육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보육료×100%,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다. 보육료 수납액의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¹¹⁾
- 각 어린이집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

라. 어린이집의 보육료 결정 및 수납

-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아래의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필히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하므로,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읍·면·동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 보육료 지원 신청
 -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신청일부터 해당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 보육료 지원내역(만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기본보육료 등)
 - 기타 보육료 및 입소료 반환, 보육료 지원기준 등

예시 (안내문구)

-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만0~2세반)에 대해서는 아이행복카드로 지원하는 보육료와 별도로 정부로부터 기본보육료가 직접 지원됩니다.
* 기본보육료지원금 : 0세 383,000원, 1세 185,000원, 2세 121,000원
-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1일 이상 출석시 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를 지원합니다.(출석일수 0일이면 미지원)
* 입퇴소월에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하며,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출산에는 최대 2개월 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 3~5세 누리과정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13.3.1일 이후 지원이력)

※ 보육료 수납시에는 보육료 납부고지서를 반드시 발급

11)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5호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 지원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보육료) 가능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등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수납기준은 정부지원보육료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상호합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및 수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에게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하고 상호합의하여야 함

예시 보육료 수납액

(단위 : 원)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18,000	0
		만1세	368,000	0
		만2세	304,000	0
		만3세	220,000	0
		만4세	220,000	0
		만5세	22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38,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438,00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만0세	418,000	0
		만1세	368,000	0
		만2세	304,000	0
		만3세	22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만4세	220,000	
		만5세	22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438,000	0
	누리(3~5세장애아)보육료	만3~5세	438,000	0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유아만(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보육료 내역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마. 행정조치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45조(어린이집 폐쇄 등),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보육사업안내 참고

4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가.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나. 개념

-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다. 필요경비 세부내역

- 필요경비 내역은 다음과 같이 7개 항목으로 분류함
 -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주의사항 :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 ➡ 단순히 학년이 바뀌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재입소료', '재원료')별도 비용 수납 금지

-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1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33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 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라.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및 수납

- 시·도지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를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함(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 특별활동비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정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는 타 유형의 어린이집보다 수납한도액을 낮게 정할 수 있음

표준안

항 목		내 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既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연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연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월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월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연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월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 지사 자체 정함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마.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도지사 및 어린이집 원장의 유의사항

- 2012년도부터 새로이 정한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은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법 제38조에 따른 필요경비별 수납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코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고하는 표준안에 따라 필요경비 세부 내역별로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운영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라는 취지임
- 어린이집 원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필요경비 세부 내역 분류기준에 따라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할 것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바.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함
※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사. 행정조치

-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제44조 제5호, 제45조제1항제3호
- 관련 문서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216(2011.09.16)호“질의에 대한 회신”

5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 정의

-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나. 특별활동 운영규정(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 (운영계획)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 비용, 횟수, 시간 등을 포함한 특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
- (정보공개)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과목, 대상연령, 비용, 시간, 업체 등을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월 1회)

※특별 활동비용, 업체 등 공시항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수정 필요

- (보호자 동의) 특별활동 실시를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서식)
- (대상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다만,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운영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대체프로그램 운영)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하여야 함
- (시설의 관리 강화)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 실시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 (비용 구분 계리)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세입 및 세출)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예시

- 교재교구비 ➡ “(200)사업비 - (210)사업운영비 - (212)교재교구비”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비 ➡ “(100)어린이집 운영비 - (130)관리운영비 - (132)수용비”에 기장
-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 (지도·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 실시(법 제41조)

6

사용자 부담금 보조기준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1) 보험료 산정(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¹²⁾×6.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

○ 보험료(사용자부담금)

$$= (\text{보수월액} \times 6.12\% \times 1/2) + (\text{보수월액} \times 6.12\% \times 6.55\% \times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됨

2) 보수총액의 신고(동법 시행령 제35조)

○ 신고의무자 : 사용자(시설의 대표자)

○ 매년 3월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3) 휴직 등 기타 사유에 해당될 경우¹³⁾의 보험료 부과(동법 시행규칙 제50조)

○ 자격 : 건강보험 자격이 있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보험료

- 사유발생 전월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
- 휴직기간동안의 보험료 부과 정지
- 복직 후 보수지급 최초 월에 정지되었던 보험료 일괄 부과(분할 납부 가능)

나. 국민연금 부담금(국민연금법)

○ 보험료 산정(국민연금법 제88조)

- 보험료 ⇒ 표준소득월액×9%(보험료율)×1/2
- 표준소득월액¹⁴⁾(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율 ⇒ 9%(사용자 및 보육교직원 각 4.5%)

12) '보수월액'이라 함은 직장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일정금액 미만 및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하한선을 둘 수 있음 ⇒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참조(p.????)

13) 기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휴직, 산제, 파업 등과 같이 근무하지 않고 추후 보수 지급이 없는 경우에 한함

14)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전년도중 당해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함

다. 산재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어린이집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국·공립 어린이집 중 직영시설로 직원이 공무원인 경우와 가정어린이집 운영 시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2) 산재보험료(사용자 부담금)

- 임금총액×0.7%(보험료율)

라. 고용보험

1) 가입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고용보험법 제5조의2)

2) 고용보험료

- 사용자부담금(어린이집의 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¹⁵⁾

– 임금총액의 1,000분의 9(보험료율) ⇒ ①실업급여(0.65%), ②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비용 사업(0.25%)

- 보육교직원부담금

– 임금총액의 1,000분의 6.5 ⇒ 실업급여(0.65%)

15) 국공립 중 직영어린이집 등의 부담비율은 관련법령(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달리 적용

7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 2016년도 보육교직원의 자체 보수기준 작성시 교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
 - 보육교직원의 보수관련 일반적인 사항은 근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등)을 기본으로 함

2)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보육교사 등의 호봉, 근무성적과 시설의 운영 여건 및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로 교직원을 구분하여 보수를 지급하되,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직원(사무원, 사회복지보조원, 도우미 등)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적용
 - ※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사용자와 고용자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및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3)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교직원 월지급액’은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 월 지급액을 말함
- ‘월지급액(봉급월액)’은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연봉을 월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금액
- ‘연봉액(보수총액)’은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가계 보조수당, 명절휴가비, 교통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연간 총 급여를 산정한 금액
- ‘호봉’이라 함은 근무경력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함

- ‘시간외수당’이라 함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수의 지급

1) 봉급월액(월 지급액)

- 인건비 국고보조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
 - 「2016년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재정형편에 따라 설치자와 협의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보조 또는 지급할 수 있음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급하여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하여야 함)
 ※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 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시설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균형있게 사용

2) 보수계산 기준

-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봉급표상의 월지급액으로 하되,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보수지급일

-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다. 퇴직급여제도

-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따름
-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 회계연도의 결산 보고서(매년 3월 31일까지) 퇴직 급여제도 관련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금 퇴직급여제도 운영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3)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 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님
 - 단,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4)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월 이내에 퇴직 급여·퇴직적립금 목으로 여입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하여야 함

라. 기 타

-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자(운영하는 자에 위임 가능)는 이 지침 및 「근로 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참고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근로관계법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보육교직원이 교육중인 경우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원장과 교직원간 협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단, 법상 의무교육인 보육교직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8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

가. 건강관리(법 제31~제32조, 시행규칙 제33조)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
 -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서식 II-2> 생활기록부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 가능(예방접종내역 출력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같음)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
 - ※ 어린이집의 장이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에게 식중독 및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
 -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감염병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2) 보육아동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이나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신규입소 예정 아동의 경우, 전 어린이집에서 당해 연도 내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검사결과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영유아 건강검진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입소 시 건강검진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지 말고 먼저 입소 조치 후 검진기간 내 검진을 받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안내(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71개월까지 생일 전후 받도록 검진기간이 정해져 있음)

－ 또한 건강검진 결과자료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건강검진내역조회 출력자료로 같음할 수 있음

○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 원장은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를 3회 이상 고지·안내

－ 3회 이상 고지·안내 후에도 보호자가 건강검진 거부 시에 원장은 건강검진 실시 여부와 거부 사유를 생활기록부 등에 기록



참고사항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 및 별표4)

● 검사항목 :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③ 발달평가 및 상담 ④ 건강교육 ⑤ 구강검진

● 검진주기 : 총 7차에 걸쳐 검진

① 생후 4~6개월 ② 생후 9~12개월 ③ 생후 18~24개월 ④ 생후 30~36개월

⑤ 생후 42~48개월 ⑥ 생후 54~60개월 ⑦ 생후 66~71개월

* 구강검진의 경우 3차, 5차, 6차에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됨

(3차는 18개월~29개월, 5차는 42개월~53개월, 6차는 54개월~65개월까지 검진가능)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9호, 2015.1.27. 일부개정시행.)

※ 원장은 보호자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협조(검진비 : 무료)

－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어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30% 이하인 자에 대하여 평균 20만원의 정밀 검사비 지원(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 1577-1000)으로 문의

나) 검진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해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아야 함(동법에 의거 '10.3.22.부터 영유아의 경우 출장검진 불가)

다) 검사항목

○ 신체계측, 시력검사, 청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며 영유아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4항)에 준함

라)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조치

○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염성 질환¹⁶⁾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 치료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아동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 시설의 장은 건강검진(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아동(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④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그 밖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건강주치의제도

가) 추진목적

-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환 조기발견, 질병 예방 교육, 예방접종 및 정기 건강검진 등을 통해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나) 추진방안

-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시행 권장 및 주치의제 참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시 반영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와 긴밀히 협의, 주치의제에 참여할 의료기관 파악 및 관련정보 제공 등 의료기관-어린이집 간 협약체결 지원 및 독려
-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주치의) 선정 및 상호협약 체결
- 의료기관(주치의)에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유아·교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 규정 범위내에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등 서비스 제공

4)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및 조치

가) 건강진단 : 매년 1회 이상 실시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16)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아동의 경우 격리대상이 아님

나) 검진 기관 및 양식

- 신규채용시 : 채용신체검사서에 따름(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가능)
- 그 외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한 일반건강검진으로 같음

※ 보육교사는 비사무직근로자에 해당되어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대상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 포함 실시

다) 검사항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의 건강진단시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에 준함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건강검진실시기준 제6조제1항)

- 검사항목 : ① 문진과 진찰 ② 신체계측, 혈압측정, 시력·청력 측정 ③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 검사 ④ 구강검진 ⑤ 건강위험평가 ⑥ 인지기능장애 검사 ⑦ 1차 검진 결과 상담
- ※ 위 항목은 직장건강검진 기준과 같으나 연령에 따라 일부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라)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자¹⁷⁾는 완치 시까지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¹⁸⁾

5) 기록관리

- 원장은 교직원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여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급식관리(법 제33조, 시행규칙 제34조)

1) 영양관리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되,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인근 육아종합

17) 단, B형바이러스는 공동생활 공간에서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감염의 가능성이 없어 격리대상질환이 아니므로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보육교직원의 경우 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이 아님

1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참조

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함

※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하여 식단 작성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하여야 함¹⁹⁾(전담 원칙)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함

-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시행규칙 제34조)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경우²⁰⁾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를 배치하여야 함
-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안전 및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식단표에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하여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식단표 작성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의해 대상품목²¹⁾의 원산지를 기재하여 공개
 - － 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도 그에 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
- 기타 특별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에게는 보호자(부모 등)의 의사를 반영하여 음식을 제공
 - － 입소시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해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하여 급간식 제공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이 제공되지 않도록 주의
-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구매 시 식약처에서 권고한 품질 관리 기준 참고(부록8)

19) ※ 영양사의 직무(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79조)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20)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1.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2. 영양사 업무방해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협조·준수

21)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 등 산양 포함), 쌀, 배추김치, 넉치, 조피불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시행령 제3조제5항 참조)

- 세부적인 식재료의 등급규격 및 고르는 방법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cfsm.foodnara.go.kr>) 자료마당 참고

2) 급식위생

- 어린이집의 원장 및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조리 직원(영양사, 조리사, 취사부)은 작업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위생모,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장신구는 착용불가)
 - 조리 전·후 식재료 및 음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화기 및 조리기구 사용에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여건상 부득이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 보관하고 식품과 소모품의 품명, 용도 등을 표시
-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안 됨
-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하는 등 철저히 관리
 - ※ 냉장고 확보 및 음식물류 사전검사, 유통기한 경과 등 유의
- 어린이집 내 조리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 용구를 세척·살균 및 소독하고 <서식 II-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① 급식분야)를 참고하여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

3) 급식사고 등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실급식 관련 집단 민원제기, 식중독 등 급식관련 사고,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현황, 사고내역 및 조치사항 등을 즉시 시·도 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4) 급식재료 공동구매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되, 어린이집연합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공동 수행 가능
 - 사전 수요조사, 업체 선정 등을 위한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하되, 지방보육 정책위원회로 대체 가능

-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복수 공급업체 선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중소기업·대형마트 참여, 농어촌 산지 직거래시스템 활용 방안 강구
 - 생선·야채·과일 등 신선도가 요구되는 식재료나 대량·일괄 구매가 가능한 유제품 등은 별도 전문업체 선정으로 선택권 보장
- 자율적 참여 원칙, 다만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은 참여를 원칙으로 함
 - ※ 식재료 구매비용의 40% 이상 공동구매 시 참여 인정
 - 모든 급식재료를 공동구매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공동구매가 아닌 개별구매 가능
- 공동구매 추진단위(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별로 공급업체와 ‘공통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은 ‘공통계약 22)범위 내에서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상세 내용을 정함
 - 공급업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소량 포장 배달 서비스 제공
 - 매일 배달을 원칙으로 하되, 영아전담시설 등 급식량이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 주 2~3회, 격일 배달 등 별도 계약 가능
- 공동구매 추진단위별로 ‘표준 식단’과 식재료량 등을 표시한 ‘레시피’ 제공
 - 영양사가 있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표준 식단을 제공하거나, 100인 이상 시설(또는 보건소 등)의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식단 개발단’을 구성하여 제공 가능
- 급식재료 공동구매 대금은 카드결제(월 1회)를 원칙으로 함
-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급식재료 공동구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부정기 식재료 검수·공급업체 현장점검, 정기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불만을 반영한 개선사항 전달 등 사후관리 실시

다. 위생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1) 위생관리 일반

-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22) 계약기간, 납품 및 검수, 반품, 계약해지, 위생점검 등 공통사항 규정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위생관리를 위하여 환기, 청소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개선 등 주기적으로 공기질 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다중이용 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실내공기질 측정 및 결과 기록·보존
 - 실내공기질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10.5월 배포)에 따라 실내공기질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2011.4.28. 제정, 2012.4.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이행하여야 함
 -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기록·보존(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 다만, 「석면안전관리법」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
 - 석면건축물의 유지 관리기준 준수

- 석면 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

※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2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환경관련부서에 문의

- 석면조사 실시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 석면관리 실태조사 관련사항 입력

2) 음용수 관리

-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서 사용
- 정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 관리
-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

3) 동물관리

-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애완동물, 곤충 등)을 두어서는 안됨
- 동물을 둘 경우에는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영유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함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가. 안전관리 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함
- 어린이집 내 ‘CCTV 등’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록5의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름

나. 분야별 안전관리

1)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원장은 <서식 II-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²³⁾(②안전분야)에 따라 매일, 매월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함
-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주변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아동복지법시행령 제29조)
 - (지정신청) 어린이집의 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지정신청서식(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 별지 제13호서식)
 - (지정범위) 해당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구역

23) 위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은 표준안이며, 적절하게 수정 활용 가능함

- (지정시 조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조사
-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아동보호구역 공고
- CCTV의 설치·관리 및 예산지원(아동복지법시행령 제30조)
 -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에 CCTV설치 및 교체·수리 등 사후관리 조치
 - (모니터링) 경찰서장은 아동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CCTV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
-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 시·군·구청 및 경찰서 협조)

2)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 보육교직원 행동 지침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안전관리 및 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점검방법 및 안전점검표의 활용법, 영유아의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한 보호 및 안전교육 방법에 대해 숙지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와 상호 협력
 -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다. 차량안전 관리(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 통학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어린이집 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 가능(2008.9.2)
 ※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차량 운행시 행정처분 : 시정명령(시정명령 위반시 최대 3개월 운영정지)

- 운전기사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교통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실시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II-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라. 안전교육

1)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

-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함
 - ※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유형별 분석 및 관리대책 제시, 영유아별 연간교육계획 및 활동사례를 담아 발간한 「어린이집 안전매뉴얼 연구」 보고서(2008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 안전관리매뉴얼」 및 「어린이집 응급처치 매뉴얼」을 참고하여 영유아의 안전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
- 어린이집의 장은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 대피, 지진 대피, 폭설 대비 훈련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난 대비 훈련을 월1회 실시한다.
 - 비상대피 훈련은 부록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를 표준으로 시행하되 어린이집의 실정에 따라 변경 운영 가능
 - ※ 비상대응계획 : 소방, 지진, 폭설, 수해, 영유아 돌연사 등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비상 사태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

- 어린이집의 장은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안전교육 기준(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구분	교통안전교육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기 (총시간)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교육 내용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날씨와 보행안전 5. 어른과 손잡고 걷기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1.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2.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3.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4.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5.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1. 내 몸의 소중한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교육 방법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 지도 및 부모교육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사례 분석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해야 함
- 화재 등 긴급사태에 대비한 계획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안전관리교육 - 보수교육 연계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 공제회가 주관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한 과목*(3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처리 중 한 과목 선택 인정

분 야	과 목	시 간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및 대처법 등	2시간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예방체계의 이해 등	2시간

※ 절차 : ①아동학대·안전교육 교육 후 즉시 수료자 명단 통보(안전공제회→시·도→교육기관) → ②보수교육 대상자의 교과목 면제 신청(보수교육 대상자, 서식 II-10) → ④명단 확인 및 교육면제(교육기관)

3) 부모에 대한 안전교육

- 어린이집의 장은 영유아의 건강·위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모와 충분히 협의·고지해야 하며, 안전교육 등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마. 안전사고 예방대책

1) 비상연락체계 구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2)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 어린이집의 원장은 사고에 대비하여 부모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식 II-6>에 의한 응급처치동의서를 비치
- 원장은 사고발생 24시간 이내에 <서식 II-7>에 의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사고(중상 이상의 안전사고, 감염병 및 식중독 등 집단 질병, 화재·침수·붕괴 등 재난사고 등)는 사고발생 즉시 보고(즉시 유선 통보 후 서식에 의한 보고)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및 감염병 발생 보고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보고를 원칙으로 함

※ 2011. 1. 1.부터 감염병 보고는 <서식 II-8>에 의해 매주 월요일마다 지난주의 발생현황 보고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아동학대, 사망사고 및 언론취재 사항 등 중요사항의 경우 시·도와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통계를 관리

3) 어린이집 자체 안전점검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
- 자체점검은 <서식 II-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매일, 매월 실시하여 화재·상해 등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4) 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 목적
 -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감독 및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며, 시설장이 안전관리책임관 역할 수행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해당 시설의 경우 안전관리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
- 안전관리책임관의 역할
 - (평시) 안전관리책임관의 주요업무
 - 어린이집이 직면할 수 있는 재난, 재해에 대해 비상대응계획 수립(연 1회)
 - ※ 비상계획수립 관련 상세 내용은 5-2 비상대비훈련 지침 참조
 - 어린이집 비상대응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총괄(월 1회)
 -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수립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과의 연락체계 수립
 - ※ 비상연락망은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의료, 경찰,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보호자, 보육교직원 연락처를 포함함
 - 어린이집 내 안전관리 시설 유지관리 담당

■ 어린이집 내 안전관련 시설 ■

- 화재감지기, 소화기, 화재 경보기와 수신기 등 화재 감지기구 점검
- 비상대피도 마련, 가스 밸브, 전기 차단기 점검 및 정기적인 유지보수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활동 전개 및 어린이집의 비상대응계획 가동 및 운영
- (비상상황 및 재해 발생 후) 재해발생 전 상황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복구 절차 총괄

10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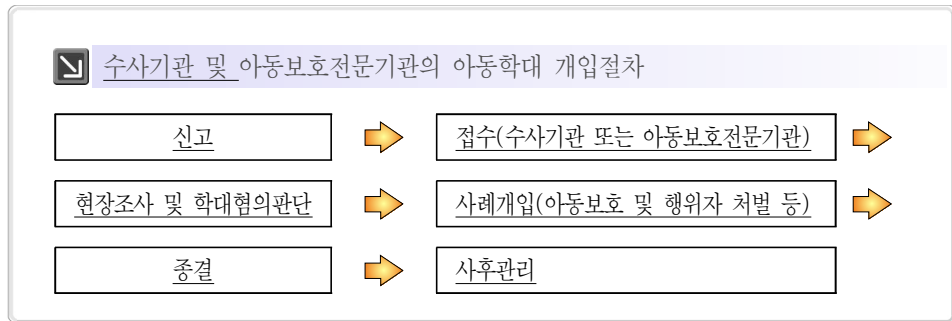
가.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아동학대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아동학대범죄로 규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따라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는 시간 동안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직원도 보호자에 해당됨

나. 아동학대 신고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

※ 2014.9.29.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 등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음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교육 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org) 정보실에 등재된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적극 활용

※ 어린이집 등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표준교육자료(전단지, PPT, 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별 자체교육으로 대체 가능

다.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 시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 포함)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다만, 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설치·운영자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학대행위 신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참여)취소
- 아동학대 사례 인지 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 또는 112)에 신고 및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합동조사하거나 피해아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시·도 및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
-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가능

마. 성범죄 등 신고 의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1

어린이집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 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나.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 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민원사항 조사, 부정수급 의심시설 점검 등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점검의 목적을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은 상기 지도점검 전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 분야(보육료 부정 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중점 점검사항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합버스 차량신고 여부 등)
-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복지부·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 최소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6.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5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 집에서 적절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지도·점검 담당자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매뉴얼 등 관련 교육 추진
- 시·도지사는 매년 지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도·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 작성 지침, 기준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 지도·점검 계획, 결과, 행정처분 전체 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추진
- 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권익위 등)에 대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현지점검 실시 및 점검기한 준수
 - ※ 2016년도 지역복지사업 평가(포상) 반영 예정
-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함(영유아보육법 제49조)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제3항,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2 등에 따라 조치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지도·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해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 : 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운영정지 3개월)

-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조치사항	사 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7.1 시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동 규칙 제35조의 9에서 규정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계좌에서 반환 가능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동법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규정에 의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 9)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행정처분 결정 시 부모, 전문가,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전원 계획을 수립

※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전원 조치시, 정원이 충족되지 않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우선 입소(지자체 담당자가 입소대기 등록 가능하므로 입소대기 신청 불필요)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부지침】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4) 벌칙(법 제5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주요 신고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유선 신고 : 02-6323-0123
 -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후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가)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나)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 (행정처분 등) 처분청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조치
- (포상금 신청)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액을 산정*하여 ‘포상금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시·군·구→시·도→ 복지부)

* 단, 신고내용과 확인된 내용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예시) 아동허위 등록 신고를 했는데 교사 허위등록이 추가 발견된 경우 아동허위등록만 지급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
(복지부→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1

바. 명단 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결정

- (공표대상 선정) 행정처분 완료 후 공표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여부 검토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서면통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일정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행위에 대하여 대상으로 선정하되, 행정처분 집행 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재검토·결정) 소명자료를 제출 또는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제출한 자료(의견)을 토대로 공표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 후 최종결정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후 기간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표대상으로 최종결정

2) 명단 공표

- (공표)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처분청 홈페이지와 어린이집정보 공개포털(info.childcare.go.kr),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공표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지도점검》위반사실의 공표관리)에 등록하여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과 연동

3) 공표현황 통보

- (통보)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에게 공표현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 신문·방송 공표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4)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 시 : 3년간 공표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 의지급)제2항 별표 4(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times 30/100$ -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times 20/100$) -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times 10/100$) -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 (가담·방조·묵인) 여부		
	- 아동학대로 판정 시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 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100만원	*시정명령 이상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교직원 이 방조·묵인한 경우
③ 급식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원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

12

유자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명의변경²⁴⁾

1) 취 지

- 민간유자어린이집의 경제난, 원리금 상환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명의변경 요건 완화

2) 인수자 요건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원장 유자격자
-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유자격자로서 원장으로 근무 가능한 자
- 유자격 원장 채용이 가능한 자
- 기타의 순위로 보육전문가를 확보한 자

3) 채무인수 및 근저당권 변경 절차

- 인수자는 채무의 동질성을 변경시키지 않고 원리금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채무 부담
- 금융기관,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으로 추진
- 인수자는 명의변경 사실을 명의변경 완료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담당 공무원은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인계 상황을 확인하여 명의변경 신고수리)

※ 종전의 시·도 지방보육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자어린이집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명의변경 사실을 보고

나. 유희공간의 타용도 사용 승인²⁵⁾

1) 취 지

- 시설면적의 과다신축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공간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부담을 해소

24)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25) 관련 근거 : 아동 65210-2094('98. 8. 25)호, '98. 8. 24.부터 적용

2) 타용도 및 적용면적 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내 보육수요, 보육환경 저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융자금으로 신축된 전체면적의 4분의 1의 범위내에서 보육교직원 휴게실 등으로 활용 가능토록 완화
- 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유희공간 활용은 불가
 - ※ 만약 타인(제3자)에게 주택용 또는 생활편익시설용 등으로 임대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융자금 회수대상 및 회수금액 판정기준에 따라 상환

다. 어린이집 이전 요건 완화²⁶⁾

1) 취 지

- 건물주의 사정 및 임대기간 만료 등 보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대 상

- 어린이집 설치비를 융자받아 건물을 임대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3) 소재지 변경 범위 및 절차²⁷⁾

- 동일 행정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더라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지도·감독권이 있는 관할 행정관청(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소재지 변경이 가능

라. 융자금 거치기간 연장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융자한 건축비, 설치비 및 기능보강비 등 모든 융자금에 대하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거치기간을 각각 3년 연장

2) 시행일 : 1999년 9월 22일²⁸⁾

26) 관련 근거 : 아동 65210-1398('99. 4. 22)호

27) '97년도 융자보육사업지침서상에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설설치비를 융자받아 설치·운영하였을 때 건물주의 사정이나 임대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에 동일 행정관청(시장·군수·구청장) 내에 한하여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음

28) 아동 65210-2880('99. 9. 22)호

3) 변경내용 : 거치기간 3년 연장

사업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건축비	5년거치 10년상환	8년거치 10년상환
설치비	3년거치 7년상환	6년거치 7년상환
기능보강비	2년거치 3년상환	5년거치 3년상환

※ 시행근거 : '99. 8. 30(월). 99-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의결

4) 시행기준

- 적용 기산일 : 거치기간 종료일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 자 :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적용
 - 원금상환기간 기도래 자 : 기존 거치기간 종료일부터 소급적용
- 적용 대상자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기존 거래 금융기관과의 개정 대출약정을 체결한 자
 - ※ 단, 거치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은 자, 개정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자, 시행일 현재 경매완료자 및 상환완료자 등은 제외
- 미납부 원금 및 원금 연체이자 처리 : 미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 상환 의무는 소멸
- 기납부 원금 및 원금 연체이자 처리 : 기납부한 원금 및 원금연체로 인한 이자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융자금 관련 연체이자 등 미납액을 우선 정산한 후 잔여액은 선납처리
- 경매취하 제비용 처리 : 상기 적용대상자 중 경매진행대상자가 경매취하를 원하는 경우 경매취하에 따른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

마. 융자금 이자율 인하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94~97년까지 민간어린이집에 융자한 융자금에 대하여 이자율 인하

2) 변경내용

- 이자율 : 3회 총 3.4% 인하, 현재 4.6% 수준(수수료 1% 포함)

시 기	3회	'00. 8월	'01. 12월	'04. 4월	'10.10월	비 고
인하율	3.4%	2%	0.5%	0.9%	3.78%	당초 8%

- 연체이자율 : 당초 25% → 15%로 인하

바. 융자금 회수대상 및 회수금액 판정기준²⁹⁾

1) 개 요

- 국민연금기금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에 융자금에 대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 융자금 회수 등 사후관리를 위함

2) 사후관리내용

- 융자금을 타목적에 사용할 경우 : 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고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융자금 전액회수
- 융자금을 받아 설치한 어린이집을 타용도(목적)로 사용하는 경우 : 아래 예시에 따라 회수

※ 타용도(목적) 사용시 융자금 회수금액 판정기준 예시

- 시설건축비는 3.3㎡당 3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건축비 9억원을 융자받아 990㎡(300평)규모의 시설을 건축하고 이중 660㎡(200평)만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30㎡(100평)을 타용도(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3억원(330㎡) 회수 조치
- 시설설치비는 3.3㎡당 2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금액 산출
 - 시설설치비 6억원을 융자받아 990㎡(300평)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이중 330㎡(100평)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억원(330㎡) 회수 조치
- 시설기능보강비는 3.3㎡당 1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타용도 ㎡ 및 회수액 산출
 - 시설기능보강비 6천만원을 융자받아 198㎡(60평) 규모의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중 99㎡(30평)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천만원(99㎡) 회수 조치

3) 융자금 회수절차 및 보고사항

- 해당 시·군·구에서 융자금 회수대상 시설을 확인한 경우 융자금 회수액을 결정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융자금관리지점) 및 국민연금관리 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반기별로 시·도에 보고, 시·도는 보건복지부에 보고

시설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대출기관	융자총액	융자잔액	회수액	회수사유 (통보일)

29) 시행근거 : 아동65210-341(2002.5.13) 및 보육지원과-1287(2004.11.30)

1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가.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
 - ※ 다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예·결산 보고등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 지역사회 인사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2010)」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사회 인사는 제외할 수 있음
 - ※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모니터링단의 참관 가능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 아동학대 예방 등의 사유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의 요구 시 수시 개최 가능

나. 기 능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가. 운영목적 및 기능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참여를 도모하고,
 -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나. 구성 및 운영

- (운영 주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전국 230개 시·군·구)
 -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교육 및 운영 위탁 가능
- (구성) 시·군·구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선정기준

사업구분	선정요건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건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모	○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컨설턴트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어린이집 중 모니터링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 우선 실시
 -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모니터링단 활동 기간) : 3~12월(10개월간)
- (모니터링단 교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필요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 후 사업시행하고, 하반기에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연 2회 이상 교육)
 - ※ 시·도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군·구에서 교육하는 경우에도 교육 내용의 통일을 위한 안내, 자료 제공 등 조치할 것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에,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를 생략할 수 있음. 단,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할 수 없음.
- 급·간식, 위생·안전 및 건강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 여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컨설팅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컨설팅 실시 및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트에 의한 컨설팅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 및 경찰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모니터링단 평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모니터링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단 대상으로 평가 실시, 다음연도 모니터링단 선정에 반영
 - ※ 기타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Ⅱ 주요 모니터링 분야 Ⅱ

-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조리, 식재료 관리 등
- (위생관리) 급식 위생,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등
- (안전관리) 환경 안전,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가. 목적 및 기능

- (선도모델제시)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부모참여지원) 어린이집의 참여프로그램에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참여 필요성,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나. 운영방식

- (열린어린이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 매년 1회 선정하며 연속으로 선정 가능
 -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등의 혜택
-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창문크기 등 물리적 개방의 정도, 운영위원회, 부모소모임 등 부모의 참여도를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
- (프로그램보급) 열린어린이집의 우수사례 등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사례집 발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컨설팅에 활용 등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보급
- (부모교육지원) 부모가 어린이집에 참관하기 위한 어린이집 관련 기본 지식, 부모참여의 의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자료 등 제공

다. 유의사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열린어린이집 선정시 지도점검 적발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 지역의 열린어린이집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16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7조의2)

가. 참관 목적

- 보호자가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원하는 경우 직접 어린이집을 참관토록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집과 부모의 이해 증진 강화

나. 참관 자격

-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보호자

다. 참관 신청 및 서식

- 참관을 원하는 보호자는 참관희망일 7일 전까지 참관신청서를 어린이집에 제출 하여야함

라. 참관 시기 및 방법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가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음

17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가. 보육사업 홍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송, 신문, 반상회 등을 통하여 보육사업의 내용 및 정부지원의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보육시설 이용제고와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각 항목의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음

- 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②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③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 ④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⑤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동 위원회는 단체 추천 또는 공개모집 등으로 공정하게 구성

※ 보호자, 보육교사 대표 등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

※ 공익대표의 예시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법조인단체, 경제인단체, 의료인단체, 언론인단체 등의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및 보육에 대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다만, 현재 어린이집이나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영유아 보육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육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18

어린이집 정보공시

가. 사업 목적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정보공시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공시 대상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10조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
공시 범위	7개 항목 18개 범위
공시 횟수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매월, 수시 공시
위반 시 제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	보유·관리정보를 공시 횟수에 맞게 공시 및 관리

다. 정보공시 범위 등

- 어린이집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등 기본현황
- 영유아보육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영유아보육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 어린이집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Ⅱ 정보공시 범위 및 횟수·시기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기본 현황	가. 일반 현황		
	1) 어린이집 이름, 설립일, 설립유형, 제공서비스, 운영시간, 주소, 전화번호 등 어린이집 기본 현황	수시	수시
	2) 설치·운영자 이름, 원장 이름	수시	수시
	나. 시설 현황		
	1) 건축연도, 건물층수, 건물유형, 건물소유형태	수시	수시
	2) 건물 전용면적, 대지 총 면적, 보육실 수 및 면적, 놀이터 면적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종류	수시	수시
	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대수, 장소, 기기 종류, 카메라 성능(화소), 운영방식 등 현황	수시	수시
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가. 연령별 학급/반 현황	수시	수시
	나. 보육교직원 현황		
	1) 직종별·자격별 보육교직원 현황	수시	수시
3.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 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연 1회	4월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1) 공통과정 주당 운영시간	수시	수시
4. 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 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 경비에 관한 사항	2) 보육과정 운영 계획	연 1회	4월
	가. 보육비용		
	1) 보육료의 연령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2) 그 밖의 필요경비의 항목별 최대 수납액	수시	수시
	나.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 특별활동 영역, 프로그램명 및 대상 연령	월 1회	매월
	2) 주당 운영횟수 및 1회당 운영시간	월 1회	매월
5.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 단가 및 업체명	월 1회	매월
	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	연 1회	4월
	나. 세입결산서 및 세출결산서	연 1회	10월
6.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급식관리 현황		
	1) 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인력(영양사·취사인력), 집단급식소 신고 여부	수시	수시
	2)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수시	수시
	3) 식단표	월 1회	매월
	나. 환경 안전 관리 현황		
	1)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수시	수시
	2) 정기소독 관리 현황	수시	수시
	3) 음용수 종류 및 수질검사 현황	수시	수시
	다.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공시정보 항목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소방대피 훈련여부	수시	수시
	2) 놀이시설 안전검사 현황	수시	수시
	3) 가스점검, 소방안전점검, 전기설비 점검 여부	수시	수시
	라.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1)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2) 보육교직원 생명·신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3) 화재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 가입 현황	수시	수시
	6) 통학버스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 현황	수시	수시
7.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나.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수시	수시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현황		
	1) 통학버스 운영 여부, 신고 현황	수시	수시
	2) 통학버스 승차 인원	수시	수시
	3)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 날짜	수시	수시
	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실시 현황	수시	수시

※ 참고사항

1.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2. 예. 결산 정보는 3년 간 공시하여야 한다.

라. 사후 관리

○ 지도·점검 등과 연계

- 지도·점검 결과,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

※ 사실과 다른 내용 공개 시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처분

Ⅱ 행정처분 세부기준 Ⅱ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이상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2개월
• 정보 미공개 또는 거짓 공개 항목이 5개 미만 (단순 착오로 잘못 공시한 경우는 제외)	운영정지 7일	운영정지 15일	운영정지 1개월

※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 9] 참조)하여야 한다.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131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33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36
4.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142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145

보육교직원 자격

1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가.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기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 보육진흥원³⁰⁾에서 수행

나.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의 자격검정

1)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보육교직원 자격검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
- 자격검정은 자격 신청 시의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검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에 따라 2005.1.29.이전까지의 종전 규정(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3])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따라 자격을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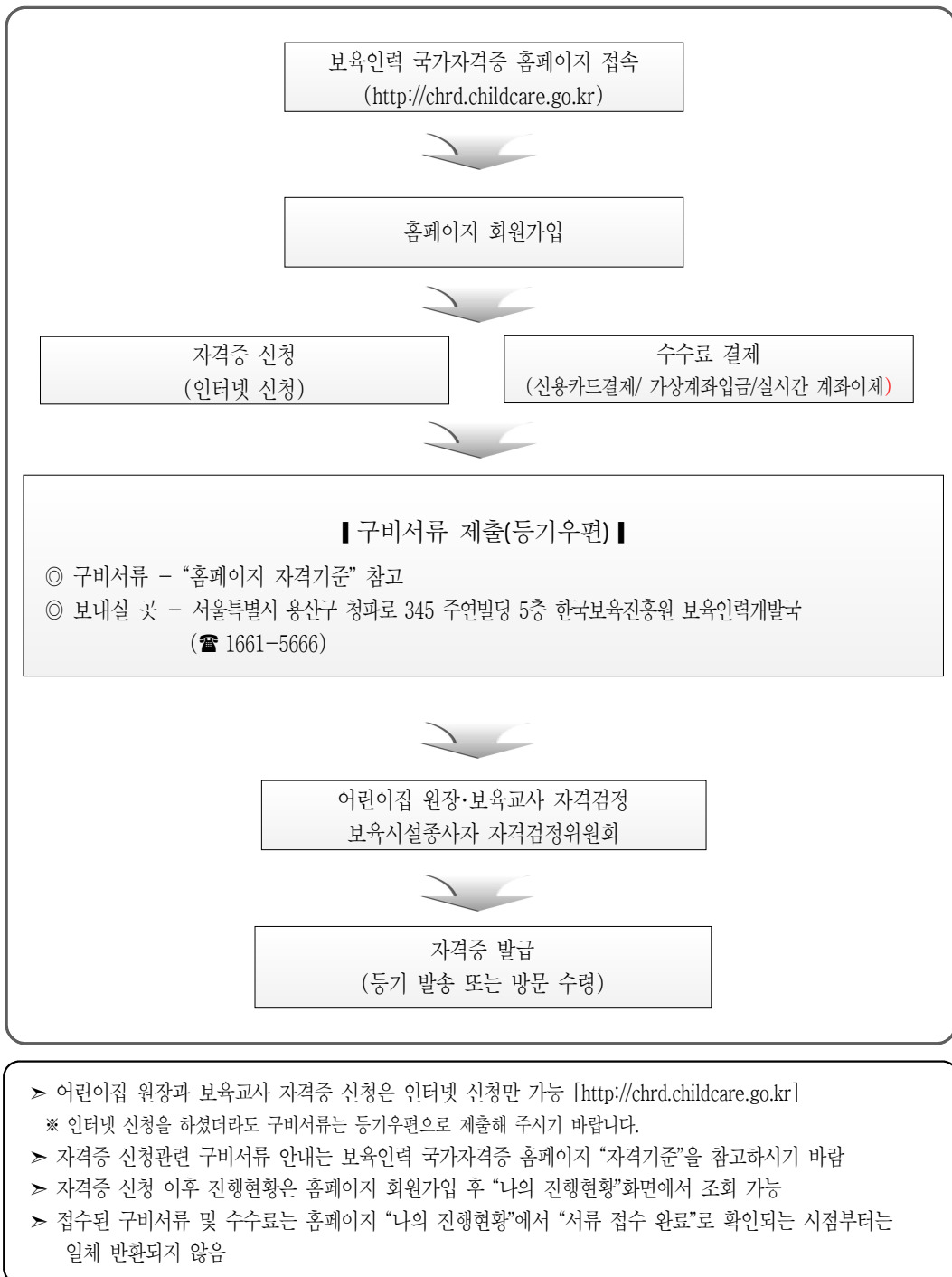
2) 자격검정 세부기준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30)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다. 자격증 발급신청 및 교부 절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14.3.1. 시행)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수학교의 정교사,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담당과목이 재활복지과목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

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에서 제외

2)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보육업무 경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또는 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 자격취득 및 승급을 위한 경력으로, 호봉인정 근무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3) 영아전담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동간호업무 경력

-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아동간호업무 경력에서 제외

4)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
 -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은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한해 근무 가능함

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 자격 요건

-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14.3.1. 시행)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1) 적용 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다른 법률에서 졸업 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교육과정은 V-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부분 참조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14.3.1. 시행)

-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7과목 5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학위를 수여한 기관에서 인정한 교과목으로,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교과목과 학점을 의미함

영역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보육필수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영아발달, 유아발달,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6과목(18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6과목(18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보육실습	1과목(3학점) 필수
전체	17과목(51학점) 이상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 2학점 이상이어야 함

※ 상기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 교과목 심의를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로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심의절차는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름. 단, 심의결과는 당해 대학에만 인정되고, 타 대학은 미적용(당해 사건에 개별적 효력만 인정)

- 다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2호> 제3조(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수해야 할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종전의 규정(12과목 35학점)에 따름

-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1월 1일 전에 입학한 사람
-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2014.3.1. 시행)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편(재)입학생의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1) 보육실습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보육실습은 ‘보육실습’이라는 교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이 원칙(보육실습은 현장실습과 이론수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따라서,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교과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다만,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다음의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로서 실습기관과 실습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 : 보육현장실습,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 보육실습 교과목은 반드시 3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B학점)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80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함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습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음

(가)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나) 실습기간

-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4주 160시간의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기준 중 연속 실습, 1일 실습시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 실습기간에 대한 해석

- 4주, 160시간 이상이란?
 - 연속하여(월요일 ~ 금요일까지) 4주, 160시간 이상 실습을 실시하여야 하고, 1일 실습시간은 8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이 원칙
 - 따라서, 주 1회 실습 또는 주말실습 등 특정 요일에만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이 160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 한해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2회에 나누어 실시하는 방법
 - 하나의 보육실습 교과목을 개설한 경우 : 학기 내에 2회로 나누어 실시
 - 학기를 달리하여 두개의 보육실습 교과목(I, II)을 개설한 경우 : 각 학기에 1회씩 실시

예시

Q : A야간 대학에서 2학년 1학기에 보육실습 I, 2학년 2학기에 보육실습 II 교과목을 개설, 학점은 각각 2학점으로 하고, 학생들은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2주 80시간(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실습)을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지도교사에게 보육실습을 받은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

A : 보육실습 이수 인정 가능

- 대상 학교의 적절성 : 야간대학이므로 가능
- 학점의 적절성 : 보육실습 I, II 의 합이 총 3학점 이상인 경우,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실습의 적절성 : 실습은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 중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보육실습 I, II가 개설된 학기에 각 2주, 80시간씩 총 4주, 160시간 실시하였으므로 인정

(다) 실습 인정시간

- 연속하여(월요일~금요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인정시간 준수

(라) 실습시기

-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직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다만, 2009년 2월까지의 보육실습 이수자에 한해 실습시기(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실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

(마) 실습 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하여야 함

※ 2013.3.1 이후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반드시 실습 지도교사 기준 준수

(바) 보육실습확인서

-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보육실습 내용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서식 III-3>의 보육실습확인서를 제출

(사) 실습관리 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관리

- 2013. 3. 1.이후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제출하여야 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보육실습 내용 등록·제출방법

- ① 보육실습 내용 등록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등록]에서 보육실습생 정보와 실습지도교사 정보를 입력 → [저장]하여 등록 완료
 - ② 보육실습 내용 제출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교육관리] → [보육실습생관리] → 대상자 조회 후 [선택] → [제출][메세지 창 확인] → [확인]하여 제출 완료
- ※ 주의 :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에서 2회로 나누어서 실습한 경우에는 보육실습생 등록 및 제출을 각각 해야 함. 제출된 내용은 자격취득을 위한 정보로 전송되므로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보육교사 자격취득 관련 대면교육 강화 및 보육실습 확대]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 1. 12.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Ⅰ 교육영역별 교과목 및 학점

구 분		교과목	이수과목 (학점)
교사 인성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 (6학점)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필수 교과목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 (27학점)
	선택 교과목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 지도, 특수아동 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12학점) 이상
보육 실무영역	필수 교과목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 (6학점)
전체		17과목 51학점 이상	

② 대면 교과목

구 분	교과목
인성 영역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보육 지식과 기술 영역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보육 실무 영역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교육영역별 대면교과목 실시방법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③ 보육실습 기준

구 분	기 준
실습 운영	이론수업과 보육 현장실습으로 운영
실습 기간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실습 기관	-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 3명 이내 지도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 실습시간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실습의 평가	-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 작성 - 평가점수 80점 이상

④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3조)

- 대학 등에 입학한 사람
 - 2017.1.1. 이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2017.1.1. 전에 대학 등에 입학하는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 아래의 교과목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 필요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학점인정 등)
 -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다만, 이 경우에도 2017.3.1. 전에 아래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으로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4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 기준

※ 「2016년 보육사업안내」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보육교사(p.311~314)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보육교사로 근무 가능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는 아래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한해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근무 할 수 있음

(‘16.3.1.부터 만5세 이상(취학아동제외)의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순차적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16.3.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1. 특수교사 자격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자격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제2항
-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3.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근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 배치기준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 이어야 함
이 경우 배치된 교사 2명 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이어야 함
- 배치시기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
-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장애아전담 보육교사로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부칙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직무교육과정(온라인교육 40시간, 온라인교육 평가, 집합교육 40시간)을 2016.3.1.까지 최종 이수한 사람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가.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임면권자가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의 적격성 여부 확인
- 특수교사 및 치료사의 자격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과 달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및 시·군·구청에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특수교사 자격기준은 16.3.1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라 특수교사 자격기준(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을 적용하되(순차적으로), 그 외에는 아래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을 적용

나. 특수교사의 자격기준

1) 특수교사 자격의 인정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이 가능한 특수학교 유치원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을 의미함

※ 특수교육법 제 19조에 의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동법 시행령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제 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 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2007.10.26. 이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치료교육, 2007.10.26. 이후에는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경우에 한함)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 －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본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를 말함
 - － 교과목과 명칭이 다르더라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사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기본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 참고 (p. 147)

※ 유사교과목 외에 교과목 내용이 유사하면 유사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유사교과목확인서 <서식Ⅲ-2>를 통하여 확인

2) 자격의 적격성 판단 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의 적격성 인정
- 대학에서(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의 적격성 인정

※ 위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 및 장애아전담보육교사로 근무 가능하나, 2016년 3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자격기준(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유치원 과정))을 충족한 경우 특수교사로 근무할 수 있음

※ 자격증빙서류

- 신규채용자 : 졸업증명서(공통), 성적증명서(공통), 유사교과목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자 : 경력증명서

다. 치료사의 자격기준

1) 치료사 자격의 인정범위

- 국가에서 발급한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치료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한 자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 소지자[언어치료(교육)사, 행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에 한함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학회명 :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정서·행동장애 아교육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대한작업치료학회,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재활 심리학회 등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언어장애전문가협회는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및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발급하던 자격증을 통합하여 발급하는 기관이므로 인정

2) 어린이집 근무조건

- 치료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일반 직무 또는 특별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채용에서의 특례인정

- 특수교사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치료사로 채용할 수 있음

5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확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 2011. 8. 4, 시행, 2012. 8. 5.)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갖춘 교사를 2016. 3. 1.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함
 - * (배치시기)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3.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3.1.부터, 만 3세의 휴학하지 않은 장애영유아: 2018.3.1.부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를 위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절차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기관 : 한국보육진흥원³¹⁾
 - * 관련근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21호, 2015.7.1.)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
 -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 발급 관련 중요사항은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름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
 - * 자격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는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신청 및 발급절차와 동일함(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

31)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서울특별시 용산구 총파로 345 주연빌딩 5층) • <http://chrd.childcare.go.kr> ☎ 1661-5666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요건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3]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해야 함
 - 2012.8.4. 이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16학점) 이상 이수
 - 2012.8.5. 이후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24학점) 이상 이수
- ※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참조(<http://chr.d.childcare.go.kr>)

[적용사례]

- ① '12. 8. 4. 이전에 A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B대학에 편입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② '12. 8. 4. 이전에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부 인정받고 '12. 8. 5. 이후 C대학에 편입 또는 입학을 하여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8과목 24학점**
- ③ '12. 8. 4. 이전에 D대학에 입학하여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일부 이수하고 '12. 8. 5. 이후에 나머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8과목 16학점**

참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 3,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

1. 2012년 8월 4일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치료교육 실기,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 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 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보육실습, 아동발달론
학 점	8과목(16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특수아(장애아) 부모교육론	부모교육 및 훈련, 부모교육과 가족치료, 특수아부모교육, 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아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 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 심리 및 교육, 특수아심리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정신건강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가족복지 및 치료,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와 평가, 심리 평가 및 진단,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 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보육학 개론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 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특수교육공학, 재활공학
보육실습	전담보육 또는 통합어린이집 실습
아동발달론	인지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적응행동 발달, 사회성 발달, 발달심리

2. 2012년 8월 5일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

가.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

기본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특수아)통합교육, 개별화 교육계획, 언어치료학개론,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특수아(장애아)부모교육론, 특수아 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서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언어발달장애, 자폐장애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장애아동보육론,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보육교사론, 발달지체영유아 조기 개입
학점	8과목(24학점) 이상

나. 유사 교과목 인정 기준: 가목의 기본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다음의 유사 교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기본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교육학개론	재활 및 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개론, 특수아동교육, 특수교육개론, 특수교육학, 유아특수교육학, 특수아동지도
(특수아)통합교육	장애영유아통합교육, 통합교육, 특수아 통합 및 보육 세미나
개별화 교육계획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언어치료학개론	언어지도 및 치료, 언어치료학, 언어치료 및 실습, 언어장애아교육
장애영유아교수방법론	장애영유아 교수법, 장애아동 보육론, 특수아동지도, 특수아동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특수교육공학

기본 교과목	유사 교과목
특수아 행동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행동수정, 학습이론과 행동수정, 장애인문제행동지도
정신지체아교육	정신지체교육, 정신지체아교수방법 및 실습, 정신지체인 교육과 재활, 정신지체아심리 및 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 청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청각장애교육, 청각장애아심리 및 교육
정서장애아교육	정서장애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아 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정서 및 사회부적응아 교육, 정서행동장애인 교육과 재활, 정서 및 행동장애아 심리 및 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학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인 교육과 재활, 학습장애아 심리 및 교육, 경도장애아 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지체아동교육, 지체부자유교육, 지체장애인 교육과 재활, 지체부자유아 심리 및 교육
언어발달장애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언어지도 및 치료, 의사소통장애개론, 언어장애아교육
자폐장애교육	자폐스펙트럼장애 교육
특수아 상담 및 가족지원	재활상담, 장애가족상담, 특수아 상담, 가족상담
특수교육 측정 및 평가	장애 유아 진단평가, 장애진단 및 평가, 장애아 심리 및 검사, 장애진단과 평가, 특수아(장애아) 진단 및 평가
시각장애아교육	시각장애인교육과 재활
장애아동보육론	장애아 보육과정 운영
감각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동교육
특수교구교재제작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실습

3. 교과목의 명칭이 제1호 및 제2호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를 심사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보육교직원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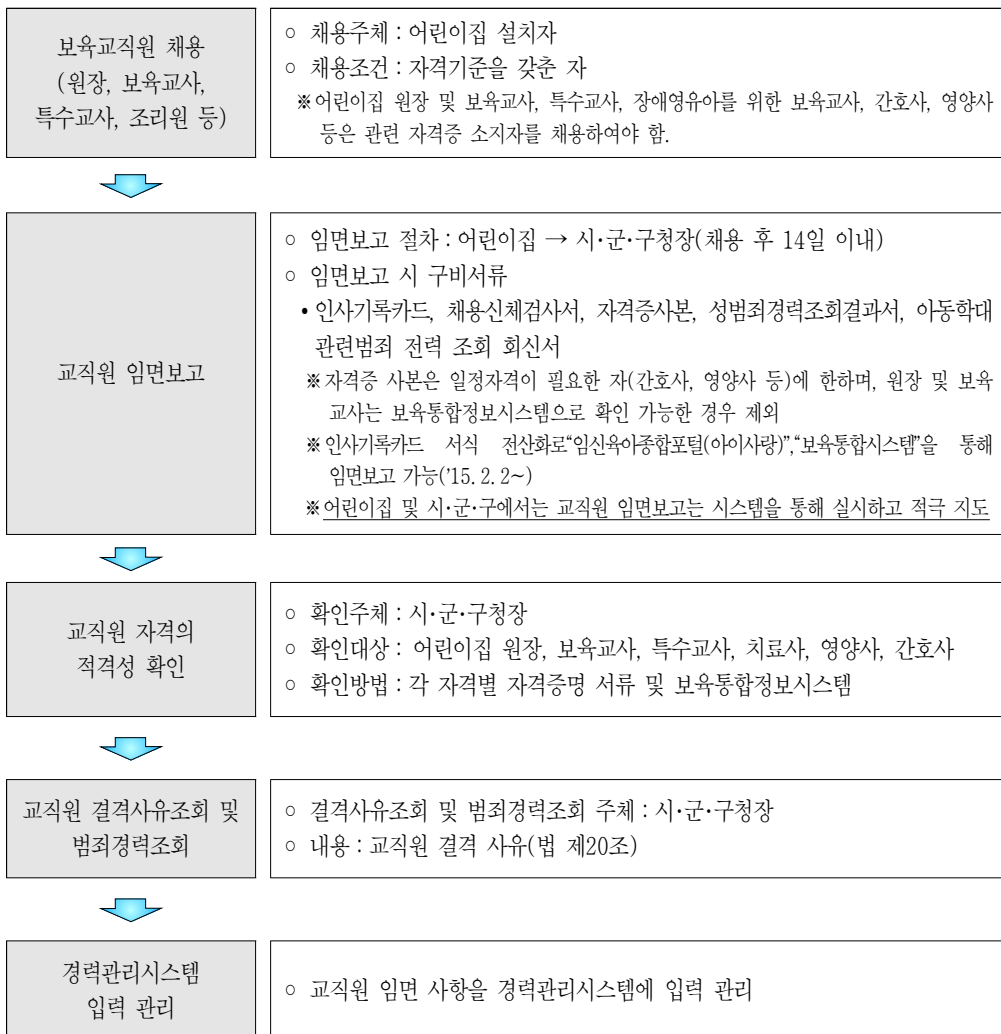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53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154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59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160
5.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161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166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69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179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182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185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189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2

보육교직원 임면(채용, 해임 등)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 국·공립 어린이집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써 교직원 임면권을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

※ 단,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교직원의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민간 어린이집 등 : 어린이집 설치자

- 부모협동어린이집 :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대표자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 임면권을 위임 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 발급 조건부로 채용 가능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하여야 하므로 상근이 어려운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

(나) 보육교사

- 시행령 제21조 [별표 1]의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 다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고 자격검정이 완료되어 자격증 발급이 예정된 자(자격번호가 부여된 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봄

※ 국가자격증 발급 여부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교직원 등록 시 조회 가능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중전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 가능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2) 채용방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고사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육교사를 채용·배치할 수 있음
- 교직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되,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결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퇴직요구 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관할행정 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함
 - － 근로계약은 가능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함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 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 파견자도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 검사서로 인정 가능.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는 전염성 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

(나) 원장 및 보육교사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치료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얻어 시설(기관)장이 신청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시설정보 사전 등록 → 취업예정자 등 동의 → 기관(시설)장 신청·발급)

- ※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 관련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활용 안내(보육사업기획과-309, '15. 1. 12)
- ※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는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 성범죄 경력조회 위반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부과대상임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상·하반기, 부분 또는 전수조사 가능)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8~9)로 문의

라.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기(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포함) 전에, 또는 채용 중(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인 경우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을 통하여 신청 하고 확인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 및 원장의 경우에도 적용

※ 범죄전력 조회요청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의 동의서 첨부

※ 조회대상자는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와 동일(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구체적인 사항은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02-558-1391)에 문의

※ '16. 3월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확인이 정기적으로 가능하니 시도, 시군구에서는 점검시 활용,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 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별도 시행예정」 참조

마.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바.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시스템을 통해 임면보고 실시 및 보관. 다만, 불가피시 서류로 직접 제출하되 관련 서류보관·비치
 - '15. 2. 2 부터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 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존 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III-5>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 : 자격증 사본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보육실습생에 대한 지침 안내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IV-4>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가. 일반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1개월 이상의 장기 병가·연수·휴가, 퇴직 등의 임면사항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등록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함
-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 ※ 어린이집 대표자가 실제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야 함
-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3호의2에 따라“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2012.2.5. 시행)

나. 임면보고 방법 및 첨부서류

- 보고방법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시 원칙적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 첨부서류와 함께 등록
 - ※ 시·군·구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은 임면보고 서식(서식 Ⅲ-6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
- 첨부서류
 - － 인사기록카드 사본(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 － 자격을 요하는 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단, 원장 및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제외)
 - －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4

보육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 조건이 필요한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의 적격성 확인

나. 확인방법

1) 원장 및 보육교사

-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 특히,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일반어린이집 원장’ 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무자격자가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증빙서류 포함)을 통하여 자격의 적격성 확인

다. 자격증 발급 및 임면관리

- 원장 자격증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등으로 나누어지는 바,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도 별도로 발급
- 따라서, 정원 40인 미만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40인 미만 어린이집 원장’ 이상의 원장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함

5

보육교직원 결격 사유 확인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나. 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및 제20조)

- 1) 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2697호, 2014.5.28.) 안내

 - ① 제16조제8호는 2013년 8월 13일 이후 행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적용됨
 - ② 제16조제1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
 - ③ 제16조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람과 제45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13321호, 2015.5.18.) 안내

- 제16조의 개정규정(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2)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간에는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3)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년(제48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른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로 인한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한국보육진흥원, 시·군·구를 통하여 자격정지 및 취소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정지자 및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다. 결격사유조치(구: 신원조치) 업무처리 요령

※ 결격사유조치는 행정자치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중 「결격사유조치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처리하며, 결격사유 조치와 별개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범죄경력조회 실시 필요

1) 결격사유조치 대상자

☐ 결격사유조치 대상자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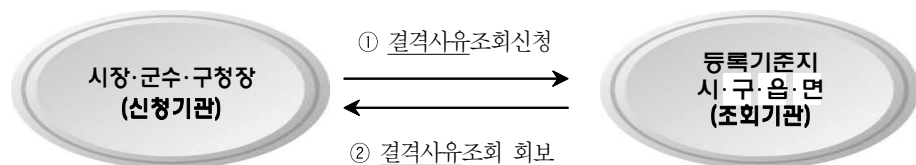
2) 결격사유 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

- 신청기관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 조회기관 :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출장소장 포함)
- 결격사유조회 :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기관이 조회기관에게 신원기록 내용의 확인을 신청하는 것
- 결격사유조회 회보 : 신원조회에 따라 조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원기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기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것

(나) 결격사유조회 방법 및 세부 처리절차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식 III-7>에 의하여 즉시 조회기관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결격사유조회를 신청하고, 신원조회 <서식 IV-1> 및 회보대장 <서식 IV-2>을 기록·비치·관리
- 조회방법은 FAX, 행정전산망, 우편의 방법으로 조회 함
- 조회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서식 IV-3>를 별도로 편철·관리 및 보관
- 결격사유조회·회보업무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육교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



3) 결격사유조회 비치서류 등

- ①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 ② 결격사유조회 요청서 <서식 III-7>
- ③ 결격사유조회 요청대장 <서식 IV-1>
- ④ 결격사유조회요청 회보대장 <서식 IV-2>

4) 결격사유조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서 상의 결격사유조회 대상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조회기관에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송부

- 결격사유조회 요청서를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송부(FAX 등)한 후 접수여부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
- 조회기관으로부터 회보가 된 경우 반드시 관련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서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통지하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지 못하도록 조치

5) 기타사항

-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라. 범죄경력 조회 업무처리 요령

○ '16. 3월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매뉴얼(보육교직원 범죄경력조회 기능 사용 매뉴얼)」 참고

1)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처리 절차

(가) 용어의 정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범죄경력조회 :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 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
- 범죄경력자료 :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나) 법적 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다) 범죄경력조회 업무 절차

-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경력 조회기관인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문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신청

※ 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시 반드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인한 결격사유자 등이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라) 유의사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

- 직무상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해서는 안되며,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 이를 사용하여서도 안 됨.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 유의

6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가. 일반원칙

-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직원 자격 및 결격사유에 이상이 없는 자(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관리 시스템(보육통합정보 시스템)에 임면 사항을 입력·관리
 -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경력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 교직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의 사항도 경력 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영유아보육을 위해 채용된 대체교사(임시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사항도 경력관리 시스템에 입력·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허위 등록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고된 경력에 대하여 삭제 조치

나. 경력 및 재직증명서 발급

- 보육교직원(또는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부터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경력(재직)증명서 <서식 IV-4>를 발급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의 경우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장도 가능)
 - 발급대상 :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직원 등 보육교직원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된 자
 -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발급대상이 아님. 다만, 대표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 방법 : 경력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경력(재직) 증명서 발급

다.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작성·보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상의 교직원 관리 대장을 비치·관리

라. 경력관리 시스템 도입 이전 경력의 처리 요령

1) 일반원칙

- 보육교직원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해당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보육교직원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 및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기준에 따라 해당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 ※ 2005. 1.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청장이 관리 (법 제20조)하게 되었고, 2005. 7. 31.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2) 근무 시기별 경력 인정 및 입증 서류

(가) 2001. 3. 31까지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의하여 경력 인정
- 다만,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이 별도로 보관·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가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경력 인정

(나) 2001. 4. 1~2005. 7. 30까지 근무한 경력

-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및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경력 인정

(다) 2005. 7. 31 이후 근무한 경력

- 2005. 7. 31.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관리하므로 교직원 임면보고 시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관리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3) 어린이집에 종사한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구 분	관련 증명서류
어린이집 원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배상보험, 자동차보험, 소득세원천징수부,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간식비, 교재교구비 등)관련서류, 처우 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지도·점검관련서류,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납입영수증, 소득세원천징수부,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은 관련서류, 급여계좌입금 관련 영수증 또는 금융거래 통장사본, 그 밖에 교직원 임면보고서 등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경력관리시스템 도입 전 근무경력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한 근거 서류를 보관

7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가. 목적,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 2014년도 보육교직원의 보수 책정 시 호봉 산정 기준 제시

2) 적용범위

-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원장
-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 조리원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용어의 정의

-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함
-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나.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

1) 시행권자

-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확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할 경우 경력관리시스템에 호봉을 입력·관리

※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이관('05. 7.31부터) 받아 보육교직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리

2) 호봉인정 근무경력

- 호봉획정 시 인정되는 호봉인정 근무경력은 아래 경력에 한하되, 다. 보육 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 따라 시기별로 적용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새마을유아원, 탁아시설에 근무한 경력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대체교사 경력 포함)
- 2005년 1월 30일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병역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현역병 의무 복무기간

3)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증명

-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의 재획정 시 이전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
 -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시장·군수·구청장 발행 경력증명서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은 경력관리시스템(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 : 교육청·유치원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 군 의무 복무기간 : 군경력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4) 초임호봉의 획정

-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산정

5) 호봉의 재획정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교직원이 재직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해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 확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호봉을 재확정하는 때에는 초임호봉 확정방법에 따름
- 호봉 재확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

6) 호봉승급

-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
 - ※ 보육교사에 한하여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호봉 인정(시간단위로 합산하여 경력인정, 2011.7.1.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합산,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 인정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로 2회 시행

예시

Q : 2007년 3월 1일에 호봉 인정 근무경력이 2년 10개월인 갑이 A어린이집에 임용될 경우 호봉 및 다음 호봉 승급일은?

A : '07. 3. 1. : 3호봉으로 책정, '07. 7. 1. : 4호봉으로 호봉 승급

-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날 시행되는 바, 갑의 경우 '07. 7. 1. 현재 호봉인정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므로 4호봉으로 승급 조치

다.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

1) 1999.12.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범위

(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 경우

- 동일시설(새마을유아원 및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 동일시설이라 함은 「甲」 새마을유아원에서 「甲」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며, 동일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시설로 봄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1개월 이내의 기간은 계속근무로 봄
 - ※ 동일시설의 계속근무라 함은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함

예시

甲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하던 金○○ 시설장이 甲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설장으로 계속 근무한 경력은 모두 호봉으로 인정(○○새마을유아원 ⇒ ○○어린이집)

※ 보육교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보육교사로 종사하던 자가 당해 시설의 시설장으로 직종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음

(나) 경력을 제한적으로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1) 동일시설 근무경력의 호봉인정 등

- 1982. 2. 22 전문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이전 아동복지시설에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아동복지 법시행령 부칙 제5조)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며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 1982. 2. 22 이후 임용된 자로서 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자격인정 이전기간은 근무경력의 50%를 인정
 -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 초급호봉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
- 양성교육 이수전 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 경력의 50%를 인정하되, 양성교육 이수 후부터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정('91. 8. 8)이전에 무자격이었던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동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 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유자격 근무경력은 100%를 인정

(2) 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간의 전보 발령이 이루어진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을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인 1992. 1. 1 이전 원장을 다른 공립어린이집으로 전보 발령한 경우 이전 계속 근무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시 '91년말 현재 공립 A시설에서 5호봉으로 받고 있는 교직원(보육교사 → 보육교사, 원장 → 원장)가 '92. 1. 1 전보발령으로 관내 공립 B시설로 옮긴 경우 6호봉으로 인정

- '96. 1. 1 이후 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이 관내 다른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96. 1. 1 이후 동일 법인내에서 어린이집간 전보된 경우
- (3) '96년말 당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교직원이 '97. 1. 1 이후 타 지역(전국 단위)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으로 근무지를 옮겨 계속 근무하는 경우 '96년말 현재 교직원 경력인정 2) 인정범위 “가)”와 “나)”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산정

예 ①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97. 1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확정

② '96년말 현재 4호봉인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공백기간(1개월 이상)을 가지다가 '97. 3월에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근무가 아니므로 1호봉으로 확정

 **경력 인정 개선 :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

• 1996년 12월말 이전에 민간어린이집에 계속 근무한 교직원 경력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

예시 6년말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4년간 계속 근무했던 교직원이 1997년 1월 1일부터 국공립 및 법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2) 2000. 1. 1. 이후 경력인정제도 개선

○ 1999년도까지는 교직원 경력인정 인정범위의 기준에 따라 계속 근무한 경력만 호봉으로 인정하였으나, 2000. 1. 1 이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 근무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예 '99년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있는 교직원(1월 1일 호봉승급자)이 2000년 2월에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확정

3) 교직원 직종 변경

(가)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로 인하여 원장 자격 기준에 해당되어 동일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예 '03년말 현재 10호봉(1월1일자 호봉)으로 근무중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가 동일시설의 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04.1.1현재 11호봉으로 확정 가능

(나) 동일어린이집에서 직종을 변경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어린이집에서 타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 근무경력의 100%를 인정

예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어린이집에 간호사로 채용되어 근무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100%를 인정

(다) 동일어린이집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 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원장 및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사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의 50%를 호봉으로 인정, 단 어린이집을 옮길 경우 호봉인정 안됨(보육65210-235, '02.11.4)

(라) 보육교사로 계속 근무하던 자가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직종 변경시 원장 자격 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 근무경력 100%를 호봉으로 인정('03. 1. 1시행)

예 2002년말 현재 2급 보육교사로 A어린이집에서 10년간 계속 근무하다가 2003.1.1 B어린이집으로 옮길 경우 원장 자격취득 이후 보육교사 계속근무 경력 100% 인정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1991. 1. 14. 이후)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

교사로 종사하는 경우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100%를 호봉으로 인정
4)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구 종일제유치원을 포함)

(가) 관련근거(법 제50조)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 수업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에서 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나) 유치원(방과후 과정 운영)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의 호봉인정 방법

○ 호봉인정 근무경력의 범위

－ 2005. 1. 30. 이후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로 근무한 경력 : 100% 인정
- 교원 이외의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50% 인정

○ 호봉인정을 위한 근무경력 입증 방법

－ 교원(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 :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경력 증명서 제출

※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 서식은 없으며, 해당 유치원에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것을 교육청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방과후 과정 운영사항이 기재된 인가 확인 서류, 유치원장 직인의 방과후 과정 유치원 운영확인서류 및 공문 등)면 가능

－ 임시강사, 기간제교사,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 : 해당 유치원의 기관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제출

5) 대체교사 및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의 호봉인정 기준

(가) 대상자 : 보수교육, 출산휴가, 시간연장형 등 대체교사(임시교사 포함)로 투입된 보육교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 포함)

(나) 인정범위 : 주당 30시간 이상을 종사한 보육교사

※ 2011.7.1. 이후 보육교사에 한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간 단위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으로 인정.
2011.7.1. 이전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불인정

(다) 인정시기 : 2005. 1. 30 이후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근무한 경력

(라) 인정 방법

- 어린이집 원장은 대체교사(임시교사) 임면사항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면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
- 2005. 1. 30. 이후 관할 시·군·구청에 임면 보고되어 대체교사(임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확정 시 호봉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대체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보육교사의 호봉 인정 근무경력으로 인정

(마) 기타사항

- 대체교사 또는 임시교사로 관할 시·군·구청(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임면보고되어 어린이집에 종사한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승급(2급 → 1급)을 위한 ‘보육업무 경력’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6) 보육교직원 휴직 시 호봉인정 범위

- 출산휴가(3개월 이내) 또는 육아휴직(1년 이내) 기간은 호봉확정 시 경력기간으로 산입

Ⅱ 연도별 종사자 호봉인정과정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0년	○ 전제 : '89.12.31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동기관이 탁아시설로 전환하여 종사자가 계속 탁아시설에 근무할 것 ○ 호봉인정 － 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의 근무경력을 사회복지업무경력으로 인정하되 보수는 자격취득시 까지 초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은 '90. 9. 18까지 탁아시설로의 전환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전환시설은 아동복지법령에 의한 소정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1년	○ 1990년도 호봉 인정사항 유지 － 다만, 무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부칙제6조에 의하여 '94. 1. 13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야함 (향후 무자격 원장 및 보육사에 대하여 양성교육 실시 예정) ○ 동종유사시설의 보육시설로 전환(영유아보육법 제정) －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 보육시설로 인정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유아시설 및 시범탁아소 → 보육시설로 인정 －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미인가탁아시설 →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 ※ 지침상에는 전환시기를 '92. 1. 13까지로 연장함 ○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부칙제6조)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 3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상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갖추어야 함
1992년	○ 종사자 호봉(경력)인정을 별도의 제목으로 편제 － 유자격자, 무자격자, 양성교육이수자로 구별하여 호봉(경력)인정을 설명함 ○ 호봉(경력)인정 － 유자격자 :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경력에 따른 근속호봉 인정 － 무자격자 ① 1982. 2. 22이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 경력에 따라 근속호봉을 인정하여 보수는 지급하되, 양성교육을 통하여 추후에 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② 1982. 2. 22이후 임용된 자로 동일시설(어린이집 및 새마을유아원)에 계속적 근무하고 있는 자 • 자격인정시까지 초급호봉기준으로 보수지급하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근무경력의 50% 인정 － 양성교육 이수자 ① 양성교육이수전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 5할 인정 ② 양성교육이수이후부터는 근무경력 10할 인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정으로 종전의 무자격자가 유자격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동시행규칙제정('91.8.8)이전 근무기간(동일시설 계속 근무 전제)은 근무경력의 5할을 인정하고 동시행규칙 제정 이후의 근무경력 10할 인정

연도	호봉인정사항
1993년	○ 199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선사항 추가 - 동일시설 계속근무일경우만 경력 인정(어린이집 → 새마을유아원 → 보육시설)
1994년	○ 1993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사자 직종변경 사항을 추가 ○ 종사자 직종변경시 경력인정 -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등이 동일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을 가져 시설장이 되는 경우 근무 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가진 자가 근무 중 동일시설의 시설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 종사자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동일시설에서 타직종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 10할 인정 ex)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간호사가 A보육시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보육교사로 변경 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 10할 인정
1995년	○ 1994년도 지침내용과 동일 - 다만, 보육교사종사자 중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관리 사항 추가
1996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유사경력 인정 사항을 추가 ○ 유사경력 인정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이 '92.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 발령한 경우 - '96. 1. 1.이후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또는 채용)된 경우 - 동일 법인내에서 보육시설간 전보된 경우
1997년 ~ 1999년	○ 1995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근무지변경시 호봉인정) - '96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97. 1. 1이후 타지역(전국)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까지 인정받은 경력을 인정 -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97. 1.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5호봉으로 인정 - ex) '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공백기간을 가진 후 '97. 3. 1 다른 시설로 옮길 경우 계속 근무가 아니므로 다른 시설에서 1호봉으로 확정 ※ 1997년 지침에는 민간보육시설 사례가 없었으나, 2000년 지침에는 “민간 보육시설에서 4년간 근무했던 종사자가 '97. 1. 1부터 국공립 및 법인시설로 옮길 경우 1호봉으로 확정(민간보육시설근무경력은 '97년부터 호봉으로 인정)”하도록하여 해석상 혼란 발생
2000년 ~ 2002년	○ 1999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계속근무와 관계없이 호봉인정) - 2000. 1. 1부터는 2000. 1. 1 후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계속근무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 - ex) '99년 말 현재 A시설에서 10호봉을 받고 있는 종사자(1월1일 호봉승급을 가정)가 2000. 2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후 4월에 B시설에 채용된 경우 11호봉으로 인정
2003년	○ 2002년도 지침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력인정제도 개선사항을 추가 ○ 경력인정제도 개선 - 보육시설간 이동에 따른 호봉 불인정분을 소급 적용 • 관내 다른 공립보육시설로 전보발령(시설장)

연도	호봉인정사항
	•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한 경력 - 보육종사자 직종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 • 보육시설 종사자가 다른 보육시설장으로 직종변경시 자격취득이후 근무 경력 인정 - 계속근무의 융통성 부여 • 전직 대기 등으로 공백이 발생된 1개월이내의 기간은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이외의 자의 호봉 인정 • 동일시설에서 사무원 등으로 계속 근무중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5할을 호봉으로 인정
2004년	○ 경력증명서 발급시 첨부서류 등 - 위 1. 종사자 관리 다. 5) 참조
2005년	○ 영유아보육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보육시설의 근무자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보육시설 근무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 - 유치원(종일제)에 근무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는 유치원근무경력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
경력인정 범위확대 과정 (요약)	① 동일시설 + 동일직종 + 계속근무(1992년) ② 동일시설 타직종 변경근무 경력인정 : 간호사 → 보육교사(1994년) ③ 유사경력인정 - 시설간 이동 제한 완화 : 공립, 법인(1996년) ④ 타지역소재 보육시설 근무지 이동시 경력인정(1997년) ⑤ 계속근무 제한 폐지(2000년) ⑥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격을 상호인정(2005년도)

8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가. 일반기준

구 분	배 치 기 준	자격기준	비 고
원 장 ¹⁾	전 어린이집별 1인 ※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 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정원기준
보육교사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 장애아 3인당 1인 ※ 장애아 9인당 보육교사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현원기준
간호사 ²⁾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영양사 ³⁾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조리원 ⁴⁾	영유아 4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현원기준 (방과후 제외)

주 1)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시 원장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야함

2) 간호조무사도 가능함

3)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군·구의 5개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며, 영양사 채용시 현원을 기준으로 함

4)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영유아 현원은 방과후 아동을 제외한 영유아를 기준으로 함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조리원의 경우에는 취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8시간 미만 근무도 가능함. 다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평일 8시간 근무를 하여야 함

Ⅱ 조리원 채용기준(예시) Ⅱ

조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영유아 수	40~80인	81~160인	161~240인	241~320인	320인 이상

※ 3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2005. 1.29이전에 한해 설치 가능하였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운영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춘 조리원을 배치

5)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축박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특수교사(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며, 원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교직원 이외에 어린이집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부담으로 보육교사 등의 교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음. 다만, 어린이집 원장은 1인만 둘 수 있음

나.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 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특례인정 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원 칙	3명	5명	7명	15명	20명
특례인정범위	4명 이내	7명 이내	9명 이내	19명 이내	24명 이내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4) 특례인정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 :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 : 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다.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2) 특례인정

(가) 특례인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 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나.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용을 허용

9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가. 교직원의 근무시간

- 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 (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 중 원장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육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을 배치하여야 함
 - 다만,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보육교사의 원장 업무 대행은 7일(연속, 휴일 포함) 이내로 제한하며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원장 또는 대체 보육교사를 배치하여야 함
 - ※ 불가피한 사유 : 휴가, 병가, 연수, 보수교육 참여 등
-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나. 교직원의 겸임제한

1) 동일 어린이집에서의 겸임 제한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은 전임이어야 하므로,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임할 수 있고,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원장이 간호사와 영양사 모두를 겸임 할 수 없음
 -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21~39인 이하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2) 다른 시설의 겸임 제한

(가) 일반기준

-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전임’이란 근무시간 동안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란 다른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 및 유치원, 종교시설 등 보육교직원의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은 “B”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겸임할 수 없음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휴일,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회의 참석 등)로 외출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

(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 제한

-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따라서, 어린이집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으로 근무할 수 없으며, 전임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시설(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음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
 - 예 “A” 어린이집의 원장인 “갑”은 “B”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 등을 겸임할 수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학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교수는 원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종전 법(2005.1.30. 개정 전)에서는 종교시설 등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종교시설의 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있었으나, 2005. 1. 30. 개정 법에서는 겸임 규정을 삭제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시설의 장 및 종교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
 - ※ 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2005. 1. 29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06. 2월말까지 개정 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다. 교직원의 휴가 등 기타 복무 관리

-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함
- 교직원의 휴가, 휴일, 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름
- 고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 준용
- 보육교직원의 최저임금 보장 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의 규정을 준용
- 기타 교직원의 복무, 근로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 개별법을 준용토록 함

10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자격정지 대상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어린이집의 원장이 업무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6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나.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법 제46조 제2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다. 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3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법 제46조 제4호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가) 5백만원 이상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나)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라) 1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마.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 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법 제46조 제5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 다의 경우 예시

- 200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08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09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09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0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1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이 되어 1차 자격정지 1개월, 2012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자격정지 3개월, 2013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3차 자격정지 6개월

3)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47조 제1호			
1)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자격정지 1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인 경우에는 2년)
2) 비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거나 영유아 안전 보호를 태만히 하여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1년
3) 그 밖의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47조 제2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다. 처분절차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청문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청문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 자격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정지, 다만 법 20조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중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없음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리할 어린이집 원장을 두어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업무를 대행할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라. 자격정지 절차도



11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가. 대상자 및 처분권자

- 대상자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 처분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나. 자격취소 사유(법 제48조)

※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둘 다 취득한 경우에는 두 자격 모두 취소(법제처 법령해석 총괄과-1310/08. 8. 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 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4.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자격정지처분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자격정지처분기간 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7.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제46조제4호*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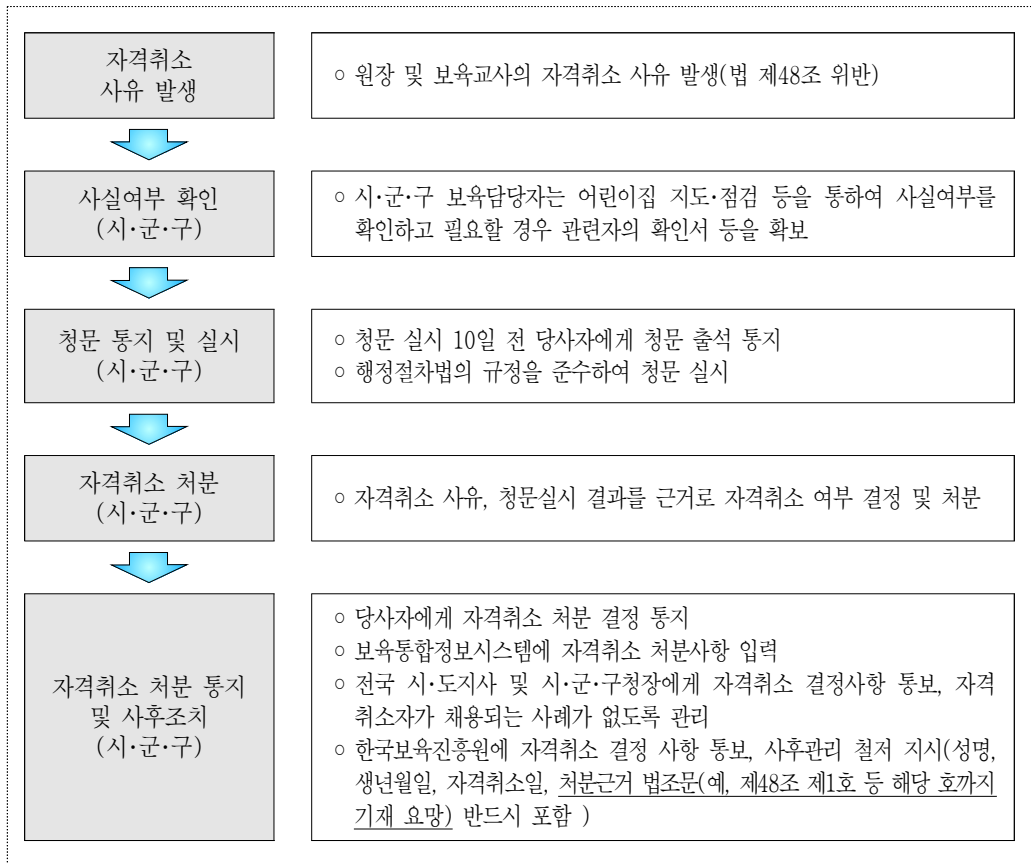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자격취소 일반절차



라.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절차

1) 자격증 대여 사실의 판단기준

○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특정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명의의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여하는 경우도 명의 대여로 간주

-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위. 즉, 관할 시·군·구청에 교직원으로 임면보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2) 대여 사실 발생여부 확인

-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생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시·군·구청의 보육담당자는 자격대여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함

※ 확인서류

- ① 대여자의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관련 서류
- ② 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사본 및 대여 받은 어린이집의 인가증 사본
- ③ 임용 및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교직원 관리대장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 ④ 자격증을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의 확인서 사본 또는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⑤ 대여자의 거주지 및 연락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사본
- ⑥ 기타 자격증 대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청문의 실시 및 자격취소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 자격 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자의 자격 취소 결정

※ 청문 실시 전 한국보육진흥원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자의 정확한 자격 정보 확인
 ※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자격만 취소

4) 처분의 통지 및 사후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취소 결정 시 대상자에게 자격취소 처분 사실을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자격취소 처분 사항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은 전국 시·도에 자격취소자 명단을 통보하여 자격취소자가 어린이집에 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요청
-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자격취소자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요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후 재교부 제한기간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지 못함
 - 다만,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 받지 못하되,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 이내에서 재교부 받지 못함.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사건처리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195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08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11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13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214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215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가. 정의

-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함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 2014.3.1.], 제20조, 제39조의4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원장 및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에서 기본 및 심화교육과정은 보육업무경력 등을 감안하여 교육대상자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음

2) 보수교육 대상자

(가) 일반원칙

- 보수교육은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교육 개시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음(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 다만, 현직 교직원 외에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보육업무 경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 2.“보육업무경력” 참고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1개월 이상)은 보육업무 경력에서 제외
 - ※ 주당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

(나) 직무교육

(1) 일반직무교육

- 현직 보육교사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2년이 지난 사람 또는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해에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현직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또는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2년이 경과한 해에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아야함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일반직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2) 특별직무교육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대상자는 영아·장애아·방과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다) 승급교육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2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는 보육업무경력이 만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1급 승급교육을 받을 수 있음
- ※ 승급을 위한 보육교사 경력은 자격증 상의 자격인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은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라)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 ※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법률 제7153호, 2004.1.29>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
- ※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

Ⅱ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 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특별 직무 교육	영아 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 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 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 교육	2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u>만 1년</u> 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 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 사전 직무 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특별직무교육대상으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일반직무교육이나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음)

※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 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히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예) 2014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6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그해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17년 12월까지 받아야 함. 201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2018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2019년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에 해당함.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1) 보육교사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교사와 인권 - 인권에 대한 이해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3	• 보육교사의 인문적 소양 - 행복한 교사되기	3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직무 이해 - 보육교사 의사소통기법 훈련	3	•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 - 보육교사 리더십 키우기 - 기관 구성원간 멘토링 실행	3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 - 보육교사의 신체·정신건강 이해·관리	2
건강·안전 (9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응급처치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의 이해 - 성폭력 및 실종 예방 교육	3
전문 지식 ·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4시간)	• 다문화교육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 다문화교육 과정 심화 - 다문화프로그램 개발	2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이해, 개발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개별화 프로그램 적용 및 부모 협력 강화	2
	보육 활동 운영의 실제 (16시간)	• 영유아 관찰 및 기록 실제 - 신체·인지·언어·정서 등 발달 관찰 및 사례 분석	• 영유아 관찰 기록의 활용 - 관찰 기록 분석 및 영유아 발달 평가와 상담 활용능력 키우기	3
		• 영유아 부적응 행동의 이해 - 부적응 행동 유형의 이해 (불안, 위축, 공격, 주의산만 등)	• 영유아 행동 유형별 발달지원 - 부적응 행동 예방과 지도	2
		• 보육정보 탐색의 적용과 사례 - 인터넷 등 정보활용방법,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이해	• 보육교사의 놀이참여 및 확장·연계 - 영유아 놀이 관찰, 개입을 통한 확장 및 연계 교수학습방법	2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디지털시대의 교수매체 활용 및 적용 － 인터넷, 스마트기기 등의 교수매체로서의 활용 방법 이해 및 실습	3	• 영유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보육대상 및 철학에 따른 보육 프로그램 운영	3
		• 영유아 인성교육의 실제 － 기본생활습관지도 및 활동에 따른 인성교육 실제 사례	3	• 영유아 인성교육의 심화 － 기관 및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인성교육 계획 실습	3
		•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영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 어린이집시설·설비관리(선택) － 어린이집 시설·설비 관리 능력 학습	3
		•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전략 (선택) － 유아 발달, 흥미, 놀이에 따른 교수방법 학습	3	• 동료 수업 멘토링(선택) － 동료교사간 수업지원능력 학습	3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 (선택)	3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 (선택)	3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3시간)	• 부모-교사 의사 소통의 이해와 실제 (선택) － 부모-교사간 의사소통이해 및 갈등상황시 소통능력 함양	3	• 열린 어린이집 계획 및 운영(선택) － 열린어린이집 개념과 환경구성 － 열린어린이집 계획과 운영 실제	3
		• 부모 개별 면담 기법(선택) － 성공적인 부모 면담 위한 대화법	3	•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사례 분석 (선택) － 지역내 육아인프라 활용능력 함양	3
	계	15과목	40	15과목	40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이수 가능

※ 「보건위생관리」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2) 원장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보육철학과 윤리 - 원장의 역할과 윤리	3	• 아동권리와 보육철학 - 보육철학과 보육이념 및 아동권리 이해	3
		• 원장의 건강관리 - 건강의 개념 및 건강관리 - 신체·정신건강관리의 이해	3	• 원장의 건강관리 - 성인기의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습관, 스트레스와 건강	3
		• 보육교직원의 인문적 소양 - 행복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2	• 보육교직원의 문화적 소양 - 예술적 소양 증진을 위한 지역 문화인프라 연계 교육	2
건강·안전 (9시간)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안 및 사례	3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관련 법안 및 사례	3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3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체계	3
전문 지식 기술 (23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4시간)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이해와 실제 - 현장사례 중심 분석	2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및 개발	2
		• 장애통합보육 운영 실제 - 기관 내 장애통합보육의 운영 이해 -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의 실제	2	• 장애통합보육을 위한 운영 관리 - 기관 내 특수교사 및 담임교사의 협력 지원	2
	기관 운영의 실제 (16시간)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관찰과 평가 - 영유아 놀이와 행동 관찰 기록 방법 - 관찰기록을 통한 아동평가 이해	3	• 아동발달진단도구의 이해와 활용 - 기관에서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진단 도구 및 방법 이해	3
		• 보육계획과 보육일지 작성 관리 - 보육교사 지도 원리 및 보육계획 수립 지도 - 보육일지 작성 원리 및 작성 지도	2	•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보육프로그램의 이해 및 개발 실제 - 영아반·유아반 프로그램 평가	2
		• 영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기초와 교사교육 - 영유아 생활지도의 실제에서의 교사지원	2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 및 중요성 -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2

영역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교수매체 선정과 평가 － 교수매체의 유형, 구입시 선정기준, 제작시 고려사항 － 교육적 가치 평가, 활용도 및 효율성 평가	2	• 보육과정 디지털활용능력 개발 － 어린이집 운영관리와 디지털 활용의 실제 및 실습	2
		• 원장의 대외협력 관리 － 원장의 대외협력 직무에 대한 이해 － 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 대처관리	2	• 원장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 원장의 리더십 유형 점검 － 리더십 유형별 조직관리 특성 및 바람직한 리더십	2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관리 및 운영 － CCTV 관련 규정 및 법규 이해 － CCTV 열람관리 방법 － CCTV 관련 개인정보 유출 예방 관리	2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매체 윤리의 실제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어린이집 내 개인정보 관리 방법 － 디지털매체 사용 예절과 윤리(사례 중심 이해)	2
		•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신 동향 － 보육프로그램의 개선	3	• 우수 보육프로그램 동향(선택) － 우수 보육프로그램의 최근 연구동향, 사례 분석 － 우수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방안	3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 보수교육기관 자체개발 교과목(선택)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3시간)	•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선택) －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참여 활성화를 위한 부모자원 활용 계획과 운영 방법	3	• 부모 요구 조사 및 활용(선택) － 연간운영계획 및 의사결정을 위한 부모 요구조사 방법 및 활용 이해	3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 실제(선택) － 지역사회 연계 참여 － 지역사회 연계 실제	3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개발(선택) － 지역사회 연계 활용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3
	계	16과목	40	16과목	40

- ※ 교육영역 별 이수시간을 고려하여, 보수교육기관에서 일부 교과목 선택하여 운영·개설 가능
 예)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와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영역의 경우 교과목 일부 선택이수 가능
 ※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2) 보육교사 승급교육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1시간)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 아동복지와 인권의 실제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2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 1급의 역할 및 직업윤리	4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와 힐링 － 보육교사의 신체 및 정신건강 이해 － 실습중심 질환 예방법 및 대처법	3
건강·안전 (12시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실행 실습	3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안전사고 예방교육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 보건위생관리 －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 응급처치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예방 기초, 개입과정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이해 및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 성폭력, 실종 예방 교육	3
전문 지식 ·기술 (55시간)	장애 및 다문화 실제 (8시간)	•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 이해 － 다양한 가정의 이해 － 다양한 가정 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발달적 지원 방법	4	•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지원 －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생활 및 발달 지원, 보육 지원 등 사례 중심	4
		• 장애영유아의 이해 － 발달기 영유아의 다양성 이해 － 영유아 선별, 장애진단, 중재의 중요성	4	• 장애영유아의 이해 및 지원 － 특수 영유아 특성별 지도 － 기관 내 장애영유아 지원 관리 방안	4
	보육활동 운영의 실제 (39시간)	• 영유아 관찰 사례 이해 및 실제 － 관찰의 기초, 관찰 기록 이해 － 일상생활 및 놀이행동, 상호작용 관찰 실습	4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관찰도구의 활용 － 관찰 기록을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4
		• 대소집단활동 운영 － 대소집단활동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4	• 대소집단활동 운영의 실제 － 대소집단활동 운영 실습	4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 신체·예술영역 발달의 이해 － 신체·예술활동 운영 방법	4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의 실제 － 신체·예술(음률)활동 운영 실습	4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4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의 실제	4

영역	2급 승급교육		1급 승급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 언어·수과학영역 발달의 이해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방법		- 언어·수과학활동 운영 실습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 역할·쌓기놀이영역 발달의 이해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방법	4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의 실제 - 역할·쌓기놀이활동 운영 실습	4
	•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일지 작성 - 보육계획의 원리, 연계성 있는 보육계획 - 보육일지 작성의 원리, 일과 계획 작성, 일과의 실행과 평가 작성	4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 작성 실습	4
	•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및 평가 - 제3차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 총론, 0-1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체계), 2세 보육과정(6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표준보육과정 운영평가	4	• 보육실습 지도의 적용과 사례 - 보육실습 지도의 의의, 계획, 운영, 평가	4
	• 누리과정의 이해 및 평가 - 3-5세 누리과정 5개 영역 목표, 내용범주, 내용 - 누리과정 운영평가	4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에 대한 이해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관리 - CCTV 관련 개인정보 관리	4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사례중심 발달영역별 영유아 행동의 이해 및 지원	4	• 영유아 문제행동 조기발견 - 영유아 사회·정서발달과 적응 지도 - 발달적 지원과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영유아 이해 - 사례중심 문제행동 지원방법	4
	•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 - 실내외 놀이 환경 구성의 기본요건, 원리, 실제 및 평가	3	• 어린이집 환경 구성 및 관리 - 어린이집 환경 구성의 원리 및 관리 실제	3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 다양한 부모-자녀 관계의 이해 - 가족형태의 다양화, 부모역할,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형성	4	• 부모참여 계획 및 실행 - 부모참여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4
	• 부모참여 및 상담 실제 - 부모참여활동 계획 - 부모상담을 위한 준비 및 실습	4	•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및 운영 - 보육과정, 장소, 활동에 따른 지역사회 연계활동 계획	4
평가시험	• 2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 1급 승급교육 평가시험	2
계	21과목+평가시험	80	21과목+평가시험	80

※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3)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12시간)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및 윤리 경영	4
		• 원장의 건강관리와 힐링 - 만성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법 등	4
건강·안전 (18시간)		• 영유아의 건강안전교육의 계획 및 관리 - 사례중심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3
		•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재난대비, 교통안전 등	3
		• 보건위생관리 - 응급처치, 질병관리, 감염병 및 약물오남용	3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 - 신고의무자의 역할	3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급식 운영의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 - 영영아기·영유아기의 영양관리	3
		• 시설·설비 안전관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원리 - 어린이집 시설·설비 기준 - 실내·외 시설의 안전평가 기준과 평정	3
전문 지식 기술 (48시간)	장애 및 다문화 관리 (8시간)	•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영유아 지원 -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 및 부모교육	4
		• 장애통합보육의 운영관리 - 장애통합보육 프로그램 및 인력 관리	4
	기관 운영의 실제 (32시간)	•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3
		• 보육 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3

영역	교과목	시간
	•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3
	•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 (예산·집행·결산)	3
	• 조직관리와 리더십 -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4
	• 사례별 발달지원 및 전문가 연계 - 영유아 발달지원 및 관리 실제 - 지역사회 의료전문가와의 네트워크 방법	4
	• 보육교직원의 수업 멘토링 - 보육교직원의 수업 능력 지원	4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 어린이집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이해 - 개인정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점검 -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안	4
	• 부모참여 계획 및 운영 - 부모교육, 부모상담, 운영위원회 등	4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8시간)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 지역사회 자원 파악 및 활용 사례	4
평가시험	• 원장 사전직무교육 평가시험	2
계	22과목+평가시험	80

※ 「보건위생관리」 교과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4) 특별 직무교육

영역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시간
보육기초	- 현대사회 변화와 영아보육 - 영아보육의 이해 - 영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장애인복지와 보육정책 - 장애아보육의 이해 - 장애아학대예방과 아동권리	- 현대사회 변화와 방과후보육 - 방과후보육의 이해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권리	6
발달 및 지도	- 영아발달의 특성 - 영아 일상생활지도 - 영아행동관찰과 평가 - 영아감각 및 대소근육 발달 지도	- 장애이해 교육과 협력 - 장애 진단과 발달지체 영유아 선별 - 교육진단과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 활동참여를 위한 보육과정 수정	- 아동발달의 특성 -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이해 - 아동 일상생활지도 - 문제행동 수정과 지도	8
영유아 교육	- 놀이를 통한 사회성발달 - 놀이를 통한 정서발달 - 놀이를 통한 언어발달 - 놀이를 통한 인지발달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의 실제 - 놀이를 통한 감각탐색 및 신체발달	- 장애아 사회성지도 - 장애아 의사소통지도 - 장애아 음악치료 - 장애아 미술치료 - 교수매체 개발 및 활용방안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과 개별화 교육의 실제	- 학습 및 과제지도 - 친구관계와 생활지도 - 아동언어교육 - 아동독서교육 - 아동예체능교육 - 초등학생을 위한 교수법 실제 -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의 이해	12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 영아 건강·안전관리(필수) - 영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장애아 건강·안전관리(필수) - 장애아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필수) - 초등학생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4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영아 부모와의 의사소통 실제 - 다양한 가정의 영아지원	- 장애아 가정에 대한 이해 - 장애아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실제	- 학령기 부모 상담 실제 - 방과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4
보육사업 운영	-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필수) -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 - 보육정보 탐색	6
계	21과목	20과목	21과목	40

※ 영아보육 직무과정 중 영아 건강·안전관리와 영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장애아보육 직무과정 중 장애아 건강·안전관리와 장애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 방과후 보육 직무과정 중 초등학생 건강·안전관리와 방과후보육교사의 역할과 자세는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편성·교육하여야 함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효율적 관리,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육교직원 교육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수요조사, 대상자 선정(시·군·구), 대상자 승인(시·도), 이수자 명단 통보(교육기관) 등을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
 - ※ 구체적 시스템 활용법에 대해서는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메뉴얼’ 참조

나. 보수교육 실시 주체

- 시·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 희망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대학(전문대학 포함),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위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다. 보수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지역의 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 실시 계획을 수립
- 보수교육 수요는 관할 지역의 현직 교직원을 기본으로 파악하되, 승급교육의 경우 보육교사교육원의 보육교사 3급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신규 배출되는 인원을 고려하여 파악
 - ※ 시·도지사는 시·도 홈페이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자비부담 대상자에 대한 보수교육 수요도 파악하여 반영. 승급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승급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 外* 교육 수요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과거 관할 지역의 원장자격 신청 실적 등을 참고하여 수요를 파악
 - ※ 휴·면직중인 보육교사,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연간 교육실시 계획은 교육수요 및 예산배정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 다만,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 발생 시에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교육생이 보수교육 비용의 자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라.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보수교육 기관 선정)

1) 위탁 가능 전문기관

-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
 - ※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전문대학)에 한함
 -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의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2) 위탁절차

(가)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공모 계획 수립

- 시·도지사는 연초 수립된 보수교육계획에 따라 보수교육 실시를 위탁할 전문기관의 선정 공모 계획을 수립

(나) 보수교육 실시 위탁공고 및 접수

- 시·도지사는 수탁기관 공모 계획에 근거하여 위탁기준,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10일 이상 공고
-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교육과정운영계획서, 교수 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 추가 첨부서류: ①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함)
- ② 건축물관리대장(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
- ③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④ 시설 및 설비목록

(다)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서 체결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위탁계약서를 체결<서식 IV-6 참고>한 후 수탁기관에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교부
- 수탁기관 결정 시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기준,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의 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선정
 - ※ 수탁기관 결정시 교과목별 교수요원 확보 현황, 전년도 보수교육 운영실적 등도 감안
- 위탁계약 기간은 당해 연도를 원칙으로 함

(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공고

3) 보수교육 실시 위탁의 취소

- 시·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기준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 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마. 보수교육 안내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가 연간 보수교육 일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별 교육일정을 자체 홈페이지나 중앙 및 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게시하여 연중 안내
 - 보건복지부는 안내상황에 대해 점검 실시
- 당해 시·도에서 특별직무교육 대상자가 적어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가.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관내 시·군·구로 하여금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의 교육 과정별 교육 개시 전까지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
 - － 일반직무교육은 의무 이수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2급 자격 취득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단,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육업무 경력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교육 개시일 전까지 보육업무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선정
 -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과 신청 당시,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만 1년 이내로 남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보수교육 실시 기관에 통보하여 대상자가 적절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수교육 대상자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현직 교직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도록 관리·감독
 - ※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보수교육 대상자” 참고
- 어린이집 원장 또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허락

나. 보수교육의 실시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정별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 실시
 - ※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과정 이외의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히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교육과정 운영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 명단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법 제20조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목 및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운영

다. 보수교육 평가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평가
 -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실시하는 아동학대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내 보수교육 과목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자세한 내용은(II어린이집의 운영, 9.어린이집의 안전관리 라. 안전교육 2)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참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서류 (재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를 제출
-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출석시간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평가시험은 교과목당 3~5문제 이상 총 80문항 이상으로 출제하되, 1회에 한해 재시험 가능

라. 수료증 발급 및 교육이수자 명단 통보 등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보수교육 수료증(서식 V-2)을 발급(출석 및 평가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료증 발급 불가)하여야 하고,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보수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작성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1)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승급교육 : 1인당 12만원(80시간 기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2) 보수교육 비용 지원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이 직무교육 및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교육 비용을 지원

※ 시·도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직무교육에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보수교육 수요가 발생하여 교육생이 교육비용의 자비 부담을 용인하는 조건으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교육비용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받는 자는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납부
- 현직 보육교직원이 아닌 경우 교육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

3) 지원절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직교직원의 보수교육 비용을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에 지원

- 보수교육 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보수교육 대상자의 귀책사유로 미수료한 경우에는 교육비용을 보수교육 기관에 지원
- 다만, 보수교육 기관은 미수료자 명단을 관할 시·도로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보수교육 미수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국고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교육 이수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생에게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 납부하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교육비용을 환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교육비용을 환급할 수 없음

나. 보수교육 현황 보고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보수교육 실시 전문기관 선정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별도 시행)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보수교육 실시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서식 별도 시행)

5

인터넷 온라인 보수교육 실시

가. 실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교육(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등의 보수교육 과정을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은 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나. 교육기관 및 내용

- 교육 기관 : 삼성복지재단, 에듀케어보육교사교육원(2015~2016년)

교육기관	홈페이지
삼성복지재단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credu.com
에듀케어보육교사 교육원 (에듀케어 아카데미)	http://www.educare.ac

- 교육 과정 : 특별직무교육 3개 과정(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

6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가.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여 수준 높은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 공급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도입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교육체계의 정비

나. 업무 체계

1) 보건복지부

- 보육교사양성 등 지침 및 교육훈련시설 지정 안내(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보육교사양성 및 보수교육관련 지침시달 : 매년 2월초까지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지휘·감독
 - 시행규칙 제13조 내지 제16조
 -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

2) 시·도지사

(가) 교육훈련시설 지정 및 지도·감독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시행규칙 제13조) 및 변경사항 승인·보고(시행규칙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청문실시(시행규칙 제16조)
-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감사 등 실시

(나) 보육교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교육실시

- 교육수요 조사 및 당해연도 교육계획 수립 : 매년 2월말까지
- 교육훈련대상자 선정 : 매년 2월 중순까지
- 보육교사 양성교육 실시 : 연중
- 양성교육 수강료 범위 지정 고시 : 해당연도 1월말까지

다. 교육훈련시설의 운영기준

1)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 5] 참조

2)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표 6] 참조

3)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가)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방법(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

- (1) 지정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2) 지정시 고려사항

- 당해 시·도의 보육교사 수급상황(보육교사교육원의 수료자 수 및 당해 도지역내의 대학 보육관련학과 졸업생 수 등)을 감안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지정을 억제하여야 하며 신규 지정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 발생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함

○ 교육훈련시설을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에 관한 타당성 여부
-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입지조건 등 적정 여부
- 설립재산, 시설, 설비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확실한지 여부와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 교육훈련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용도의 건축법상 적정 여부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의 적정성 여부(시행규칙 [별표 6] 참조)

- 1개 반을 50명 기준으로 교육생 100명마다 전용면적 467.5m² 이상의 시설(강의실·실기실습실·도서실 및 어린이집) 및 교수요원 기준 적합 여부
- 기타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원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 특히,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하여야 함

(3) 신청서식 :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4) 신청시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5) 지정서 교부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나)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5조)

(1) 변경신고사유

- 교육훈련시설의 장이나 대표자 변경
- 교육훈련시설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2) 변경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3) 변경신청 시 첨부서류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포함)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 변경인 경우에 한함)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다) 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시행규칙 제16조)

(1) 지정취소 요건

-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이 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
-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때
-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 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때
- 교육훈련시설을 1년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교육훈련시설이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지정취소 요건 교육훈련시설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철저

(2) 지정취소 방법 및 절차

- 시·도지사는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친 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3)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교육 과정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정취소를 유예

※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수료중에 있는 교육생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당해 시·도 지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라) 교육훈련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1) 휴지 또는 폐지신고

- 신고권자 :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 신고요건 : 휴지 또는 폐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신고서식 : 교육훈련시설휴지(폐지)신고서 <서식 IV-7>

(2) 교육훈련시설을 1년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라. 보육교사 양성교육의 실시

1)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보육기초	아동복지(론)[3], 보육학개론[3], 보육과정[3]	3과목(9학점) 필수
발달 및 지도	아동발달(론)[3], 인간행동과사회환경[3], 아동생활지도[3], 아동상담(론)[3], 특수아동지도(특수교육학)[3], 영유아보육의 실제[3], 방과후아동지도[2]	7과목(20학점) 필수
영유아 교육	놀이지도[3], 언어지도[2], 아동음악과 동작[2], 아동미술[2], 아동수·과학지도[2], 교재교구개발[3], 영유아교수방법(론)[3]	7과목(17학점) 필수
건강·영양 및 안전	아동간호학[2], 아동안전관리[2], 아동영양학[2]	2과목(4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부모교육[3], 지역사회복지[3], 보육정책[2], 어린이집운영과 관리[3], 정보화교육[2]	5과목(13학점) 필수
보육실습	보육실습[2]	1과목(2학점) 필수
계	25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1) 각 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시간은 4주 이상, 연속하여 160시간 이상으로 함

3) 보육실습은 시행규칙[별표 4]의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

○ 교육훈련기간 등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기간	비 고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교육생으로 등록한 자 (고졸 이상 학력자)	975시간 이상 (실습 160시간 별도)	교육훈련지정기관 (22과목, 65학점 이상)

※ 보육실습 160시간과 별도로 2학점(30시간)의 보육실습 교육과정을 필히 편성·운영하여야 함

※ '16. 8. 1 이후 입학한 경우 보육실습은 6주 240시간을 이수해야 함.

○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주간반, 야간반(혹은 오후반) 등 교육훈련기관별로 하나의 교육과정을 운영

※ '05년 1월 29일 이전 시·도지사가 평일 3종 이상의 시간대별 양성교육과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정원 범위 내에서 주간반 또는 야간반(혹은 오후반)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오후반이 편성되어 있는 교육훈련시설은 오후반을 폐지)

【교육훈련시설 교육과정 개정(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16. 8. 1.부터 시행)】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시행규칙 별표 5)

영 역	교 과 목(학 점)	이수과목(학점)
교사 인성	보육교사(인성)론(3학점), 아동권리와 복지(3학점)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보육학개론(3학점), 보육 과정(3학점), 영유아 발달 및 지도(3학점), 아동 생활지도(3학점), 영유아 문제행동지도 및 상담(3학점), 특수아동 이해와 지도(3학점), 놀이지도(3학점), 언어지도(3학점), 아동음악과 동작(3학점), 아동미술지도(3학점), 아동수학지도·아동과학지도(3학점), 영유아 교수방법론(3학점), 교재교구개발(3학점), 부모교육(3학점), 영유아 건강지도(2학점), 영유아 영양지도(2학점), 아동안전관리(3학점), 어린이집 운영 관리(3학점)	18과목(52학점)
보육 실무	아동관찰 및 실습(3학점), 보육실습(4학점)	2과목(7학점)
계	22과목(65학점) 이상	

※ 비고 1. 각 교과목당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2.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육실습은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2016. 8. 1 이후에 입학한 사람부터 적용

2)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

(가) 보육교사교육원의 업무추진일정

보육교사교육원	보고 및 승인일정		비 고
	보고기일	승인기일	
○ 양성교육과정 교육생모집 및 홍보 (전년도 12.1 ~ 익년도 2.20일까지)			
○ 양성교육과정 교육계획서 제출	1월말까지	2.15일까지	시·도지사승인
○ 양성교육과정 익년도 등록금 승인요청	12월말까지	1월말까지	등록금범위 고시승인
○ 전년도 양성교육과정 수료결과 보고	2.10일까지		
○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생 등록 보고	2.20일까지	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 다음연도 양성교육과정 모집계획 및 교육생 모집 홍보계획 보고	10월말까지		
○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11월말까지	12월말까지	시·도지사승인

(나) 교육대상자 및 모집기간

- 교육대상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 교육대상자 자격여부 사전확인 철저. 특히, 외국학력에 대한 학력인정 여부 확인 철저

- 교육생 모집기간 :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다) 교육대상자 등록신청 및 선정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모집기간 중 입소신청서 <서식 IV-8>를 받아 교육등록신청
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통보
 - 교육훈련시설의 제반여건
 - 보육교직원의 수급상황
 - 학력 등 교육대상요건 적합여부 등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교육대상자의 선정통보를 받은 후
교육생을 등록시켜야 함

(라) 등록금 수납 등

- 등록금은 매년 시·도지사가 정함
- 등록금은 교육 시간당 1,700원 이상으로 산출하며, 시·도 관할 지역 내 사립전문 대학 1년 등록금(입학금 포함)의 60% 범위 내에서 결정
 - ※ 등록금의 상한액 산정시 교육훈련시간은 보육실습 교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시간(30시간)을 포함하여 산정. 단, 보육실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실습시간(160시간)은 등록금 산정에서 제외
- 등록금은 반 편성 인원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음
- 등록금은 년 2회 수납을 원칙으로 함
 - ※ 등록금은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등록금 환불

- 제적, 자퇴, 출석시간 미달자 등에 대한 등록금 환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 별표의 기준 준용
 - ※ 수강생의 환불 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질병 또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 후 자퇴한 것으로 처리

(바) 교육훈련 과목

-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 교육과정의 운영
 - 각 과목당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학점당 시간은 15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보육실습 기간은 연속하여 4주, 160시간 이상으로 함
- 보육실습 :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 4] 기준 준용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실습시간 : 160시간(4주) 이상 연속하여 실시
 - 실습 인정시간 :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
 - 실습 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 실습생 3명 이내로 지도해야 함
 -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행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보육실습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장이 지정하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되, 현장참관은 부설(위탁) 어린이집에서 상시 실시
 - ※ 2016. 8. 1 이후에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시작한 경우 변경되는 보육실습 기준을 따라서 함

(사) 반 편성

- 교육인원 50명당 1개 반으로 편성(단, 강의는 합반이 가능하나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반별 정원을 초과하여 반을 편성·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반별로 출석부를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아) 평가기준

- 25개 교과목별로 중간평가(이론·실기) 및 기말평가(이론·실기) 실시
 ※ 이론평가는 교과목별 20문제 이상 출제, 실기평가는 교과목별 특성에 따라 실시여부 결정
- 교과목별 성적은 교과목별 시험,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를 종합하여 평가
- 수료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종합평가(성적)기준
 - 교과목별 시험(80%) : 중간평가 40%, 기말평가 40%
 - 교과목별 출결상황 및 근태 : 20%
 ※ 수강생이 시험도중 부정행위 또는 출결상황 및 근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칙 또는 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적 등의 조치를 취하되,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

(자) 수료인정

- 교육훈련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시간별 총 시간의 80%이상을 수강하고, 과목별 교육훈련성적이 70점 이상인 자로 함
 ※ 일부 교과목에 대하여 출석시간 미달 또는 교육훈련성적미달로 인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이수토록 하여야함
- 전체 출석시간 80% 미달자는 제적 처리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출결관리를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성적미달자 등에게 수료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수료증서식 : <서식 V-1> 참조 (수료일자 추가)
 ※ 수료증 분실시 발급하는 수료증명서에는 수료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함

(차) 교수요원 관리

(1) 교육훈련시설의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구 분	교수요원의 수	자 격 기 준
전임교수	교육인원 50인당 1인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 분야에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외래교수	-	• 보육관련 각 과목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보육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의 전임교수를 두어야 하며, 주·야간(또는 오후반) 교육 인원이 각각 50명인 경우에는 전임 교수를 각각 1명씩 두어야 함

(2) 행정사항

- 교수임면보고 : 전임교수의 임면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전임교수 채용 : 교육인원 50인당 1인을 채용
- 겸직교수 허용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전임교수요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음
 - 최소 1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상근하여야 하며, 교육인원 50명 마다 1명씩 증원

(3) 대학원에서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학위

- 교육학석사
 - 교육심리전공(상담심리, 생활지도, 교육철학 포함)
 - 교육과정전공(영유아보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포함)
 - 교육행정전공(교육이론, 교육정책 포함)
 - 교육방법전공, 간호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 문학석사 : 교육학전공(교육심리, 보육학, 특수교육, 교육철학 포함), 사회복지전공(사회사업학 포함), 심리학전공
- 행정학석사 : 사회복지행정전공(보건, 사회교육 포함)
- 가정학석사, 간호학석사, 이학석사(간호학, 영양학, 식품학 전공)
- 기타 시행규칙 [별표4] 또는 [별표5]의 보육관련 교과목을 전공한 것으로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카) 기 타

(1) 정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원 승인을 관리(억제)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 : 교육훈련시설의 장, 전임교수, 수강생 대표, 보육관련 지역인사를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은 교육훈련시설의 장으로 하여 구성
- 운영위원회의 기능
 -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시설은 교육계획 수립, 교재편찬, 학사관리, 학생관리, 평가관리 및 전임교수 임면 등 교육훈련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수강생의 제적처리 등 수강생의 신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운영세칙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외(가) 내지 (카) 기준에 따라 운영세칙을 제정

마.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의 내실화

1)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 (가)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수 및 자격기준 및 예산회계의 독립채산제 등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에 따른 일체의 수입은 교육훈련시설에 전액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는 철저히 지도·감독(독립채산제 실시)

※ 교육훈련시설의 수입·지출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허가된 시설(강의실, 실기·실습실 등)의 타용도 전용, 전임교수의 미확보 시설 등은 정원 및 수강료를 적정한 범위내로 삭감 조치

- 각 시·도는 매년 관할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12월말까지 복지부로 제출

- 특히, 수료인정기준 미달자의 편법수료 등 수탁사무를 현저하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는 시설은 지정취소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관계자는 인사 조치 요구

(나) 행정 조치사항

- 2013년 12월 31일 현재 기본시설 미설치 교육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교육생 모집중지 및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취소

- 수탁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원의 기본시설로 인정

※ 수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훈련시설과 동일 시·군·구내에 소재하여야 함

- 교육훈련대상자를 철저히 확인

2)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폐지시 행정지도 강화

- (가) 지정취소 및 폐지시에는 시설, 교수요원 및 수료자 명부 등 교육훈련시설관련 각종 자료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에 반납토록 행정지도 강화
- (나) 지정취소 및 폐지된 교육훈련시설 관련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하되, 교수요원 및 수료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각종 증명서류 발급
 - 발급관련 서류 : 교수요원 등 시설종사자 경력 및 재직증명서, 수료자 명부에 의한 수료증명서 등
 - 발급방법 : 반납된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요청한 증명서를 발급하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 및 수료증을 준용하여 발급